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CONTENTS

FTA 무역리포트

March 2024 vol. 01 (통권 45호)



FTA FOCUS

006

2024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 협력 분야 운영 방향

이진희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FTA 동향

016

FTA EXPERTS

030

한국 경제 FTA 20년, 경제 안보 시대에도 튼튼한 자산

김형주 | LG경영연구원 부문장

036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김민재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FTA ANALYSIS

046

중국의 대(對)한 주요 수입 품목의
세율 비교·분석

오윤진 | 한국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해외 통상 애로

058

2024 수출입 관세 조정 활용 방안
- 중국을 중심으로 -

황수한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068

홍삼(蔘)제품의 품목 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변달수 | 다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활용하기 쉬운 FTA-PASS

080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PASS

- 민원 사례를 통한 FTA-PASS 활용 팁 -

구분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092

원산지인증수출자 오류 사항과
개선 방안

황남재 | 한국원산지정보원 서울이행지원센터 센터장

FTA 지도

106

2022년 vs 2023년

FTA 수출입국 주요 5대 품목의 증감





FTA TRADE REPORT

01

FTA FOCUS

2024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2024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I. 들어가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발발과 반중(反中)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에 따른 양안 관계의 긴장 고조, 그리고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미-중 패권 갈등까지 더해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국제 질서 붕괴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 이슈는 세계 경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년 대비 0.2%p 낮아진 2.8%로 전망하였다. 미국(1.5%), EU(1.1%), 일본(1.0%), 러시아(1.0%) 등은 1% 대의 저성장이 계속되고 중국도 작년보다 낮은 4.5% 성장이 예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와 그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고물가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1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 가고 있는 자동차와 2017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달성한 반도체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1월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18%) 플러스를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무역 수지 또한 3억 불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기 극복 노력이 경기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2004년 칠레와 처음 FTA를 체결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수출 주도의 경제·산업 구조로 인해 세계 각국과의 무역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온 우리에게 있어 FTA가 갖는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FTA 시대로의 재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적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지면을 빌어 2024년 관세청이 FTA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

2023년은 국제관세협력국이 관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 개최와 인도·베트남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 수입자 원산지 검증에서 수출자 원산지 검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역대 최다 고위급 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세 행정 분야의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K-관세 행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한 획을 그은 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KCW 2023 서울 공동선언문 발표(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무엇보다도 먼저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관세 분야 ‘다보스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Korea Customs Week 2023’ 행사를 기획·개최하여 전 세계 78개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공통의 관심사와 현안을 공유하는 장(場)을 마련하였고, 40여 차례에 달하는 고위급 양자회담을 비롯해 디지털 세관 등 8개 핵심 이슈를 다룬 정책 세미나, AI 통관 시스템 등 최신 관세 기술

전시회, 해외 관세 당국과 우리 기업 간 G2B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통관·무역 원활화를 위한 「서울 선언문」과 국제 마약 단속 공조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역량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7개 세관에 ‘수출확대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특화 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532개 기업이 FTA를 신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숙원 사업이던 인도·베트남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이 모두 완료되어 종이 C/O 유통에 따른 통관 애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나마 해상 환적 후 수입되는 미국산 액체 화물에 대한 한-미 FTA 직접 운송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였다.

원산지 검증 분야에서는 기존의 수입자 검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산 원산지 가장(후회) 수출자나 고위험 해외 공급자에 대한 위험 정보 분석 및 검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한-EU FTA를 적용해 EU로 수출하는 의류(안감)에 대한 원산지 기준 해석 지침을 마련하여 국내 의류 수출 업체가 FTA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튀르키예·EU 등 수출 검증 요청 상위 4개 협정에 대해 체약 상대국의 수출 검증 요청 사유·품목·통계는 물론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최초

로 공개하여 우리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 위험 관리는 물론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최대 통관 분쟁국 중 하나인 인도 관세관을 외교부 정식 직제로 편성하여 인도 관세 당국과의 의제 설정 및 협상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7년 만의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고위급 협력을 통한 통관 분쟁 해소 노력과 더불어 재외 공간, KOTRA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해외 통관 분쟁 146건을 적기에 해소하여 543억 원의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III. 2024년도 FTA 및 국제 협력 분야 추진 방향

작년 하반기 관세청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관세 행정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 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중추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선진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개도국을 포함해 과거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말 그대로 국제 사회의 수혜자에서 공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관세 외교의 최전점에서 있는 국제관세협력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4년도 FTA 및 국제 협력 분야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

먼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¹⁾의 창설과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거대 신흥 시장인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미 지난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웬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AfCFT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FTA 체결 및 이행 경험 공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 협정 체결, 전자 통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고, 메네 사무총장도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 AfCFTA 이행 가속화와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이 매

1) 아프리카연합(AU) 5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最多)국 역내경제협력체로 2000년 5월 발효되어 2021년 1월 공식 개시되었으며 향후 5년간 최대 90% 관세 철폐가 목표. 13억에 달하는 인구와 3.4조 달러의 GDP, 저렴한 노동력과 투자 비용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부상



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청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추진 중인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AfCFTA 사무국 및 아프리카 주요 거점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이들 국가의 FTA 활용 기반을 우리의 제도나 시스템과 상호 연계 되도록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로, 국제 질서를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끌어 가는 나라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 관세청도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우리 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 개발협력(ODA)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 이외에 KOICA 등 국내 기관은 물론 IDB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영역도 다각화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세관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관세협력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인재개발원 등 관세청 ODA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전략적 ODA 사업 추진 기구를 신설하여 우리 청 대표 브랜드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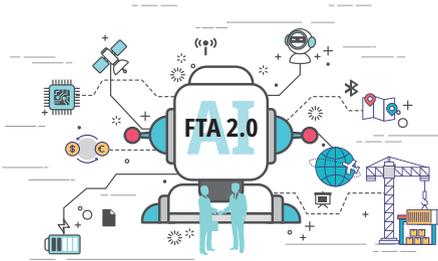
2005년에 이어 2025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APEC 정상회의²⁾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청도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의장국으로서 정기 회의와 회원국 워크숍, Customs-Business Dialogue 등 주요 행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최신 국제 관세 동향과 우리 청 중점 추진 정책에 기반한 시의성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디지털세관 구축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APEC 기금 유치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세계관세기구(WCO)와의 협업을 통해 e-C/O 교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및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고, 우리가 제안한 국제우편신고서 개정안을 WCO 상임위 및 총회에 상정하는 등 K-관세 행정 국제 표준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무역 규범을 선도

2)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1993년부터 매년 11월 아태 지역 21개국 정상회의 개최, 우리 청은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에 속해 있으며 APEC 개최국이 SCCP의 당연직 의장을 맡게 됨

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 협력 인력의 체계적인 경력 및 역량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WCO 주요 회의체 의장이나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 세계를 변화시키는 FTA 2.0 도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는 우리나라 FTA 체결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2004년 칠레와의 첫 협정 발효 이후 세계 FTA 환경 변화를 선도해 온 정부 부처 유일의 FTA 집행 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역사와 성과를 되짚어 보고 다음 단계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FTA 2.0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FTA 제도, 집행, 검증, 협상, 기업 지원 등 분야별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관세청 FTA 2.0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여 지난 20년간 FTA를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세관의 영역을 확장 및 발전시켜 온 우리의 경험을 주요 교역국들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각급 기관 및 개별 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FTA 관련 기초 정보와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품목 정보를 빅데이터나 AI 분석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하고, 종이 C/O나 BOM 등 비정형화된 자료까지 원산지 요건 확인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AI 분석 툴 개발을 추진하는 등 생성형 AI 기술 활용 기반 구축에도 힘쓸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개 협정과 관련한 143개 고시 및 지침을 협정별·유형별로 분류하여 현행화하거나 통폐합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FTA 관련 각종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킬러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한편, 원산지 사전 심사 규정을 개정해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특혜 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모든 협정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FTA 관련 규제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간 수출 지원 목적으로 양적 확대에 다소 치중해 온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당 기업 및 품목에 대한 수출 검증 및 현지 확인 결과와 연계한 위험 지표를 개발하여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관세청이 인정한 관세사가 자율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연장·갱신 심사 시 혜택을 제공하는 가치 ‘성실자율확인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



적 성장에서 품질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검증 정보나 기법은 개별 기업의 민감한 영업 기밀을 포함하고 있거나 계약 상대국의 보복 검증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청의 원산지 검증 적발 사례를 유형화하고 유의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국내 수출입 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계약 상대국들과도 공동 연수 프로그램 개발, 검증 가이드라인 상호인정협약 체결, 간접 검증 후 직접 검증 시 결과 브리핑 등 관세 당국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상대국으로부터 협정 배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 분야 국제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 기업의 신통상 수출 전략 지원

글로벌 기후·환경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통상 규범 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폐배터리, 폐촉매 등 단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폐자원에 대한 품목 분류 및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방안을 지원하고, 분해된 재활용품 사용으로 인해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재제조 물품(Remufacture)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간소화, 신품과의 동일성 여부 입증이나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중고 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결정 기준 개정 협상 추진 등을 통해 친환경·재생 가능 자원의 수출 촉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수출 첫걸음 지원’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을 통해 실질적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는 수입 검증에만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제도를 수출 검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국 관세 당국과의 분쟁 해소 지원을 위해 통관 분쟁 다발국과 관세 당국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관 파견 요청이 많은 인도(첸나이), 베트남(하노이)을 포함해 교역량과 진출 기업이 많은 국가들에 관세관이 우선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시급성이 높은 중요 통관 애로의 경우에는 세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지원 팀 파견을 통해 분쟁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4. 무역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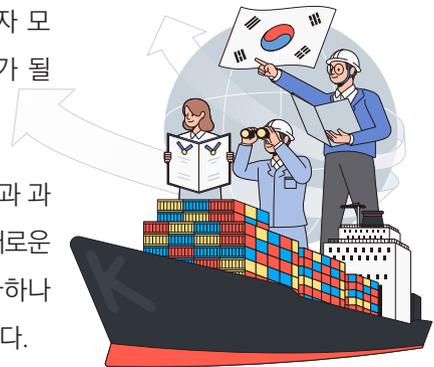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합의 등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정책 강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도 이들 정책 변화가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세 행정 분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추적, 환급 소요량 계산, 생산 공정에 대한 검증 노하우 등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계산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수술용 로봇, 공작 기계 등 국가 핵심 기술 보호와 친환경 산업 육성 등 국내외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검증 테마를 발굴하여 기획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미국·EU 등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특혜 원산지 검증 요청과 관련해 원산지 조사 및 벌칙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요 교역국이 체결한 제3자 FTA를 악용한 우회 수입 위험 분석 및 원산지 검증을 통해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도 노력할 생각이다.

현지 진출 기업의 통관 분쟁 해소 및 유의 사항 공유 등을 위해 상대국 세관, KOTRA 등과 합동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업종별 최신 관세 동향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중소기업들이 국내외 관세 무역 동향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정세나 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도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도전해 코로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수출입 기업과 산업계, 주변 종사자 모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관세청도 FTA 2.0을 비롯해 모든 정책과 과제를 국제 협력 및 관세외교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챙겨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IV. 맺음말



FTA TRADE REPORT

02

FTA 동향

- ①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 ②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통관 플랫폼 만든다
- ③ 수출 호조 품목 동향 - 김
- ④ 중국 입맛 사로잡은 K-치즈, 3년간 수출 '2배'
- ⑤ '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분야 반영
- 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5개국서 발효





- ①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 ②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통관 플랫폼 만든다
- ③ 수출 호조 품목 동향 - 김
- ④ 중국 입맛 사로잡은 K-치즈, 3년간 수출 '2배'
- ⑤ '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분야 반영
- 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5개국서 발효

FTA 동향 ①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졸업과 신학기 시즌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수입 화훼류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계획을 통하여 국내 화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내 주요 수입국인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외국산 화훼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절화(折花)의 규모 : 2014년(4,800톤, 미화 1,800만 달러) → 2023년(1만 500톤, 미화 6,300만 달러)로 중국 등과 FTA 발효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은 210%, 수입액은 350% 증가하였음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2023년 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 건수 1만 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6,492건으로 전체 49% 차지

이를 위해 저가 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통관 플랫폼 만든다



관세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급증하는 해외 직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 체계를 전면 개편한 수입 통관 플랫폼을 만든다.

기존 기업 간 무역 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 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전자상거래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배송 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자상거래 수입건수	6,358만건	8,838만건	9,613만건	13,145만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5%	41%	10%	37%
전체 수입건수 중 전자상거래 비중	81%	85%	87%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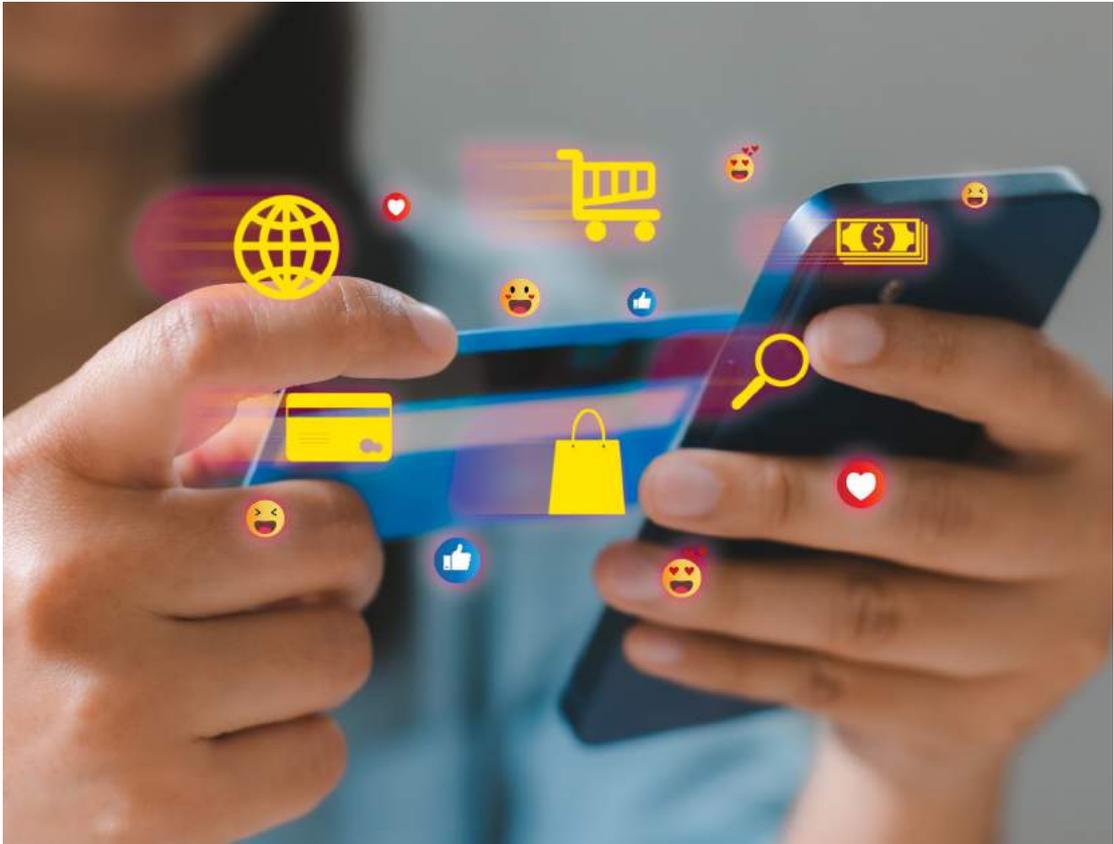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 관리 체계 구축, ③본인 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 수입신고서에 거래 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거래 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③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 시 쿼알(QR) 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 ④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하여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 상담, 세금 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수출 호조 품목 동향 - 김

팬데믹 이후,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현지 입맛과 건강까지 고려한 김 스낵 등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우수한 원료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산 김의 품질과 맛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김은 친환경 건강식품이자 채식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적으로 김 스낵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김 소비 시장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럽에서도 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는 국가별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하락(생산에 맞지 않는 환경), 나라별 식문화, 한류 음식(K-Food) 열풍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김(HS 1212.21호)의 수출액을 살펴보면 일본, 태국, 중국, 러시아 등이 주요 수출 대상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김(HS 1212.21호) 수출액*

단위: 천만달러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200,485	210,308	219,303	286,761
일본	99,482	75,186	75,060	108,167
태국	40,514	39,102	40,275	62,304
중국	26,141	49,767	52,312	51,312
러시아	16,945	26,150	30,674	44,247
미국	17,403	20,103	20,982	20,73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한 수입 규제를 살펴보면,

(1)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입 할당을 받은 바이어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하며 김 제품별로 분류된 수입 할당을 바이어가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별 수입 할당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2018년 일본 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의무화되며 수입 식품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검사, 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별도의 위생 증명서 첨부 요구 가능).

(2) 태국

제조업자의 경우 원료용 마른 김 수출 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식품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태국 식약청(FDA)의 식품 수입 허가가 필요하며 해초류를 원료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태국 수산부로부터 취급에 관한 허가(License)도 취득해야 한다.

(3) 중국

김은 수출 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경화물통관증, 수입 식품 위생 검역, 입경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류, 성분, 포장 등 미비할 경우 수출을 거부당한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러시아

러시아는 식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한 엄격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조 해조류는 '수산물안전에 관한 법률(TP TC 021.2011, TP TC 040.2016)'의 기준에 따라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년부터 러시아로 수출하



는 모든 식품에 성분, 설명서 등을 포함한 라벨을 러시아어로 작성해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5) 미국

미국으로 김 수출 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유기농' 문구를 패키징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미국 농무부(USDA) 인증이 필요하며, 한국에서 이미 인증을 획득한 경우 201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상호동등성협정에 따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6) EU

더불어, 주요 수출국 외 유럽으로 김을 수출하는 데 있어 요오드 함유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요오드 함량 기준치 규정이 없으나, EU는 1kg당 20mg으로 요오드 함량 기준치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김 제품의 요오드 함량 기준치가 높으면 유럽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장지에 요오드 함유량을 표기하고 일일 권장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수은 상승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김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업들은 유통 판매 채널을 확대하며 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김 수출 기업들이 이에 발맞추어 상기 명시한 국가별 수입 규제를 꼼꼼히 확인한 후 FTA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중국 입맛 사로잡은 K-치즈, 3년간 수출 '2배'

국내 유업 가격↑ 소비↓

가격 인상과 소비 감소 현상, 그리고 수입 우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업 기업들은 중국 치즈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HS 0406호로 분류할 수 있는 '치즈와 커드(curd)'에 대한 수출입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대중국 치즈(HS 0406호) 수출금액량

단위 : US 달러

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2월)
치즈와 커드(curd)	1,555,512	2,650,301	4,314,185	3,252,332	3,357,19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2019년 155만 달러였던 대(對)중국 치즈 수출은 2023년 12월 기준 335만 달러로 2배에 육박하는 수출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은 주로 슬라이스 치즈를 위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중국 정부의 수입 제품 규제 때문에 상황이 쉽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 치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과·제빵이나 피자 등에도 치즈가 쓰이는 만큼 관련 소비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치즈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전까지 치즈를 주로 소비했던 유럽·북미권과 달리 중국은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중국 소비자의 식품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치즈는 중국 유제품 산업의 중요한 성장 포인트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의 치즈 회사들은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여 영양을 신경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맛과 포장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의 치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기업들이 치즈 시장을 선점하려면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이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의 선호 포인트를 캐치하고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중국 치즈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A 동향 ⑤

‘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분야 반영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영국이 기존에 맺은 자유 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영국 정부와 ‘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의 안창용 산업부 자유

무역협정정책관과 영국의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의 협정을 최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바이오 경제,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통상 규범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영국이 지난 2019년 서명한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 처음 맺은 FTA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발전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 등의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국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개최식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5개국서 발효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이 다음 달 일부 국가에서 처음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IPEF 공급망 협정이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5개국에서 내달 24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IPEF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 뒤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인 작년 5월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 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협의도 담겨 있다.

협정 타결 후 작년 11월 일본이 처음 비준서를 IPEF에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미국(2024.2.5)과 싱가포르(2024.2.12), 피지(2024.2.24), 인도(2024.2.25)가 차례로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5개국 기탁 조건'이 충족됐다.

한국은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역시 국내 비준이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핵심 품목 선정, 이행 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망 협정 비준 절차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 간 논의에도 참여해 향후 IPEF 참여국 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TA TRADE REPORT

03

FTA EXPERTS

- ① 한국 경제 FTA 20주년, 경제 안보 시대에도 든든한 자산
- ②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한국 경제 FTA 20년, 경제 안보 시대에도 든든한 자산



김형주 부문장
LG경영연구원

2004년 4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도 WTO 중심의 글로벌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며 회원국 간 특혜 무역협정인 FTA 대열 합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한-칠레 FTA 협상 타결 이후 미국, EU, 중국 등 59개국이 참여하는 21개 FTA를 발효시킬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전체 교역액은 2004년 4,783억 달러에서 2023년 1조 2,748억 달러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FTA 파트너 59개국과의 2023년 교역액은 9,059억 달러로 20년간 3.2배나 늘었다. 칠레 역시 FTA 발효 첫해부터 높은 교역 증가율을 기록해 3년 차인 2006년에 2004년 대비 204%로 급증했고, 2007년에도 276%으로 3배 가까이까지 늘어났다. 그 후에도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칠레 교역 규모는 2004년 대비 334%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공정 경쟁을 외치며 시장 개방을 향해 앞다퉈 달려가던 시대는 어느덧 막을 내리고, 경제 안보와 안정적 공급망 확충을 앞세워 각종 진입 장벽을 높이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탈탄소 전환 등 미래 인류의 명운과 각국의 경쟁력을 결정할 주요 기술 및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최종재는 물론이고 핵심 원자재와 장비, 기술, 인력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점점 더 촘촘하고 광범위한 규제책들을 도입 중이다. 역설적이게도 1990년대 이후 시장 개방과 글로벌 생산 분업을 주도했던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FTA 20년의 성과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한국이 추진해 온 FTA 정책은 성과 없는 헛수고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 어떤 정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를 측정할 ‘기준 변수’가 필요하다.

FTA 성과 ‘기준’은 대체로 명확한 편이다. FTA를 비롯해, 거의 모든 경제 정책의 목표는 자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산업·통상 정책들은 교역 확대, 투자 촉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한다. 따라서 FTA가 교역, 투자, 생산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면 이를 통해 FTA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는지, 손실을 초래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한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가 워낙 다양한 만큼, 이 지표들 역시 다른 설명 변수들과의 인과 관계가 복잡해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기준 값을 설명할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제약은 관측치 부족이었다. 그 당시 한국이 체결한 FTA는 12개였지만 그중 5년 이상 관측치가 쌓인 FTA는 교역 규모가 작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등 3개에 불과했다. EU(2011년 잠정 발효)나 미국(2012년 발효)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겨우 2~3년간의 데이터가 쌓였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석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았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다르다. 참여 중인 FTA 수가 크게 늘어났고, 발효 기간도 짧지 않은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할 만큼의 데이터가 쌓였다.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별 FTA 발효 이후 5년, 10년마다 연구 용역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하는 이행 상황 평가 보고서들을 보면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FTA가 공통적으로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한-미 FTA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부가 가치 분야의 교역과 투자가 심화 발전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¹⁾ 고기술 품목 중간재 교역은 양방향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미국의 사업 서비스 수출과 한국의 프리미엄 내구 소비재 수출이 두드러지면서 관련 분야의 상호 투자도 증가하였다. 또한 개방 수준이 가장 높아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지만, 다행히 국내 산업 피해 우려 분야의 보완 대책 수립, 해당 분야 경제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 등이 결실을 맺으며 당초 예상되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세계 경제 질서와 무역· 통상 환경의 변화

아이하리한 점은 '시장 개방'을 강조하며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해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에 도움을 줬던 미국이 이제는 가격이나 효율성보다 '경제 안보'와 '가치 동맹'을 더 중시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 배경에는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성이 갖는 경제 안보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까지도 미국은 주로 '일자리'와 '경기 완충' 관점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중 견제와 미국 제조업체들의 리쇼어링을 부추겼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해 주요 전략 산업²⁾ 분야의 공급망 주도권을 잃으면 국가 안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또한 FTA 협정을 통해 체결한 국가 간 약속들도 '안보'를 위해서라면 손쉽게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국가 간 경제 협력이나 무역협정의 목표도 확연히 달라졌다. 시장 개방 범위와 조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입법 기관 승인 등을 통해 국내법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던 전통적인 FTA 협정은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반면 무역/투자/기술/공급망 등의 합의 사항을 행정 부처 간 협약으로 비교적 느슨하게 조율하는 TA(무역협정, Trade Agreement)나 TIPF(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입법부 승인이 불필요한 만큼, 의사 결정이 빠르고 유연해 통상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협정들의 목표 역시 관세 양허 등을

1)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구경현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3월

2) 의료 및 백신, 반도체, AI, 전기차 및 EV배터리 등



통한 시장 접근 개선보다 글로벌 생산 분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특정 위협 제거를 위해 제도나 규범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FTA는 여전히 유용한 대안

세계 경제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로 FTA에 대한 신뢰나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FTA 무용론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 안보 관련 이해가 엇갈리고 관심이 집중된 일부 전략 산업을 제외하면, 상당수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여전히 FTA 체계 내에서 상당한 보호를 받고 활용 시 관세/비관세 특혜도 누릴 수 있다. 경제 안보 중시와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로 효율성 경쟁이 힘들어진 만큼 FTA 특혜 관세율을 통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 차이가 더 값지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과거처럼 FTA를 상대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창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시장 배제를 막는 방패 역할은 아직도 충분하다. 한 예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상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별할 때도 FTA 체결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특혜를 제공했다. 즉 과거처럼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택 역할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FTA 활용 과정에서 축적한 원산지 및 부가가치 관리 경험 역시 쓸모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특혜 관세율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종재 생산 업체의 국적뿐 아니라 중간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다수 부품 기업들의 국적과 부가가치 누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쌓은 역량은 미국과 EU가 경제 안보를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다수의 경제 안보 관련 조치들의 적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경제 안보 시대 맞이해 원산지 관리 중요성 부각

전통적인 경제 안보 관련 교역 모니터링은 바세나르협약 등을 통해 지정한 전략 물자 품목의 통제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 등 특정 국가/기업 부품의 수출입을 ‘디리스킹’이나 ‘디커플링’을 이유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 정확하고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받는 인도, 베트남 등이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우회수출하기 위한 원산지 세탁 유혹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혹은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처럼 대중 교역이 활발하고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마련이

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수출 통관 시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투명한 원산지 관리는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대중 수입은 최종 소비재, 수출은 자본재 비중이 높다. 즉 최종 소비재는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 대체가 손쉽지만, 중간재는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전후방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지 전략을 다 함께 수정해야 하는 만큼 훨씬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 자본재는 그 독점적 특성상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지를 다른 나라로 이동하더라도 자본재 수입선을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부가가치가 적고 거래빈도가 잦은 중간재는 물류비 등의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공급선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럴 때 해당 기업들은 자사가 통관 시 제출했던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들의³⁾ 원산지 및 부가가치 정보를 잘 분석해 공급선 변경을 위한 효과적인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

경제 안보 시대로의 전환, 늦지 않게 대비 해야

자유 무역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던 시대도 함께 막을 내리고 있다. 이제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만큼 교역 파트너 선정 시 상대국의 비가격 요인들과 더불어 생산 역량의 보완성과 수용성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력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생산 모델, 즉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에 ‘단일 공장’을 세워 전 세계로 공급하던 사업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진 만큼 ‘중국의 빈자리(post-China)’를 나눠 받기 원하는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과 다층적 생산 협력을 전제로 한 수출 시장 확대와 생산지 투자도 검토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발효는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보다 10년이나 늦게 이뤄졌다. WTO 중심의 글로벌 무역 자유화라는 원칙을 강조하다가 때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 이제 또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조금씩 나타나던 낯선 조짐들이 이제는 새로운 노멀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올 11월 미국 대선이 보편적 관세 도입 논의 등 또 다른 통상 질서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디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 기업과 정부 모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3)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에 대한 상세 내역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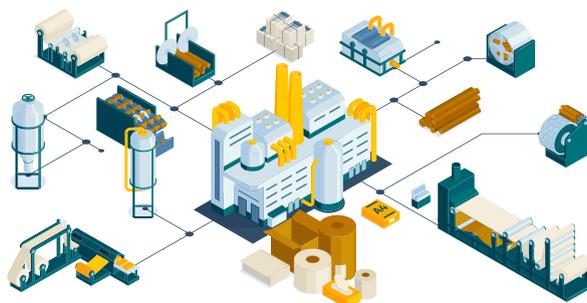
김민재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1. 서언

과거 가치사슬(value chain)의 국제화는 FTA 체결, EU, ASEAN 등의 지역 경제 통합, 중국의 WTO 가입, 저렴한 노동력 확보,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같은 요인을 배경으로 21세기에 들어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화된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이라는 개념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GVC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 전방 산업(upstream)으로부터 후방 산업(downstream)으로 흘러가는 공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added value)의 국제적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GVC에는 설계, R&D, 원재료 조달, 생산, 운송, 소비 등 복수의 공정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된다. 국제 분업을 진전시킴으로써 경제 통합을 심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데,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GVC에 역풍이 불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및 기술 패권으로의 확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 신흥국 경제 성장, 전쟁 등이 GVC의 재편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반도체 핵심 3소재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대란, 우방국들을 포함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등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및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월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GDP, 교역량, 인구 비중의 약 30%를 점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포함된 원산지 결정 기준(Rules of Origin)의 단일화·완화, 원산지 누적 조항과 같은 요인들은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팬데믹과 같은 환경 변화 이후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둔 효율성 중심의 린 경영(lean management)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안전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공급망 위기 시대에 회복성과 탄력성 중심의 공급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궤를 함께한다.





2.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가.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

ASEAN의 상품무역협정인 ATIGA(ASEAN Treaty In Goods Agreement)와 네 개의 ASEAN+1 FTA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상세한 예외 및 보조 규정 등은 배제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기준을 분류하였다. 완전 생산 기준(WO), 세번 변경 기준(CC·CTH·CTSH), 부가가치 기준(VA), 가공 공정 기준(PO)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VA의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역치를 숫자로 표기하였다. 나아가 복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병용 기준일 경우 '&', 선택 기준일 경우 '/'로 구분하였다.

【표 1】 RCEP와 기타 FTA의 각 원산지 결정 기준별 품목 수 비교

구분	ATIGA	AANZ	AC	AJ	AK	RCEP
CC		297	1	1,479	5	1,100
CC&VA40						
CC/VA40	511	841		122	524	288
CTH		203		416	11	475
CTH&VA40					1	
CTH&VA55					3	
CTH&VA60					1	
CTH/(CTSH&VA35)/VA40		197				
CTH/VA40	4,559	2,180	113	2,921	3,900	2,410
CTH/VA40/PO						78
CTH/VA50					1	
CTSH				7		16
CTSH&VA35						
CTSH&VA40		3				
CTSH/VA40	129	1,037		34	73	634
CTSH/VA45					1	

구분	ATIGA	AANZ	AC	AJ	AK	RCEP
PO		70				
VA35					3	
VA40	1	68	5,074	222	26	39
VA45					40	
VA60					5	
VA70					1	
WO	4	308	8	3	6074	164

자료: 早川和伸, 「RCEP의 貿易創出効果——原産地規則の観点から」, アジ研ポリシー・ブリーフ, JETRO No.141, 2021.



[표 1]에 따르면 FTA에서 가장 전형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인 CTH/VA40에 해당되는 품목 수가 모든 FTA에 있어 독보적으로 많으며, RCEP의 경우 AANZ 수준은 아니지만 CTH/VA40보다 완화된 기준인 CTSH/VA40에 해당되는 품목 수가 634개로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2〉 RCEP 및 ATIG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비교

RCEP	ATIGA				
	CC/VA40	CTH/VA40	CTSH/VA40	VA40	WO
CC	492	605			3
CC/VA49	8	280			
CTH	4	453	16	1	1
CTH/VA40	7	2,299	104		
CTH/VA40/PO		78			
CTSH		16			
CTSH/VA40		625			
VA/40		39			
WO		164			

자료: 早川和伸, 「RCEP의 貿易創出効果——原産地規則の観点から」, アジ研ポリシー・ブリーフ, JETRO No.141, 2021.



〈표 3〉 RCEP 및 AANZ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비교

RCEP	AANZ					
	CC	CC/ VA40	CTH	CTH/VA40/ (CTSH&VA35)	CTH/ VA40	기타
CC	294	493	6		92	215
CC/VA40	3	140			103	42
CTH		4	194		244	33
CTH/VA40		175	3	48	1,718	466
CTH/VA40/PO					5	73
CTSH						16
CTSH/VA40		8		149	8	469
VA40		1			6	32
WO		20			4	140

자료: 早川和伸, 「RCEP의 貿易創出効果——原産地規則の観点から」, アジ研ポリシー・ブリーフ, JETRO No.141, 2021.

RCEP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른 FTA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표 2]의 ATIGA에서 CTH/VA40, RCEP에서 CTSH/VA40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수가 625개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AANZ와 비교하여도 RCEP에서 CTSH/VA40이 적용된 품목 중 AANZ에서 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품목이 165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AANZ에서 CC/VA40, 그리고 RCEP에서 CTH/VA40으로 적용된 품목 수가 175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완화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RCEP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FTA 특혜를 적용하지 못했던 수출 기업, 특히 중소 수출 기업들이 이러한 완화된 기준을 충족시켜 역내 무역 창출 효과 및 수출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나. 원산지 결정 기준 단일화

양자 FTA를 다수 체결하고 각각의 상이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용, 노동, 시간 등의 자원이 소모되는 현상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 일컫는다. RCEP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존의 일본을 제외한 한·ASEAN,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었는데, 제각각 상이한 원산지 결정 기준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FTA를 포기하는 수출 기업, 특히 중소 수출 기업들이 많았다. 다양한 원·부자재를 특정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가공 및 제조하여 다른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란 기술적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쉽지 않다. RCEP은 이러한 다수 협정들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단일화함으로써 개별 FTA가 가지고 있는 원산지결정 기준의 상이함, 즉 스파게티 볼 효과를 상당히 제거해 주고 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 기업일지라도 단일화된 RCEP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부자재 및 중간재의 조달과 가공·조립 공정을 세팅해 놓으면 역내에서의 수출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RCEP 및 AANZ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비교

품목	협정	국가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자동 세탁기 (8450.11.0000)	한·베트남 FTA	베트남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혹은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한·중국 FTA	중국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한·호주 FTA	호주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혹은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혹은 직접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CEP	RCEP 회원국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혹은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hsinfosrch/openULS0205004Q.do> (검색일: 2022년 5월 31일)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일례로 [표-4]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CEP 회원국은 완전자동 세탁기 (8450.11.0000)의 수출에 있어 RCEP의 15개 회원국이 모두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원·부자재의 수입과 완성재 수출의 원활화, 공급망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원산지 누적 조항의 활용

RCEP에서 규정된 원산지 누적 조항(cumulation)이란 다른 RCEP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부자재를 수출국의 원산지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대폭 증대시킨다. 물론 현재까지도 ASEAN 역내에서의 국제 분업의 경우 ATIGA를 통해 누적 조항을 적용하였으며 ASEAN+1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적 조항이 적용되어 왔으나, RCEP의 누적 조항을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ASEAN+2-5개국 내 거대 공급망에서의 누적 조항의 활용성과이다.

예컨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소재·부품 등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플로우(flow)에 있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시 RCEP 기준을 적용하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자재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RCEP 내 폭넓은 누적 조항을 통해 기존의 개별 FTA 네트워크에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수출 기업, 특히 원산지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 기업 등에서 효율적인 원재료 수입과 역내 수출 시장 약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다른 ASEAN+1 FTA와 비교했을 경우 RCEP는 비교적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역내에서의 교역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RCEP 역내에서의 교역 및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부가가치 및 수익성 또한 제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필수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요인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 국내 전문가 및 학계로부터 항상 지적되어 왔다. 그 원인 중 하나가 2024년 2월 기준 59개국과 21개의 FTA를 체결하고 각각의 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인데, RCEP을 통한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는 이러한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다. 우리 기업, 특히 중소 수출 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용이한 원재료 수입과 역내 수출 증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3소재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수입차질 등 공급망 대란을 경험한 후 적극적인 무역 다변화에 임하고 있다. 15개국이 참여한 RCEP이라는 거대 경제권 내에서 폭넓은 누적 조항을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저렴한 원·부자재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가공 및 조립하여 생산성 높은 완제품을 양허 품목으로서 역내에 수출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입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상기 합의는 궁극적으로 역내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을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역외로는 배타성을 가질 수 있으나 RCEP의 경우 전 세계 대비 약 30%의 교역량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49% 상당을 포괄하는 시장이기에 해당 지역에서의 RVC 강화는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모두 역내에서의 효율적·안정적인 수출입에 수렴하며, 무역 자유화 및 시장 개방을 통해 무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에 기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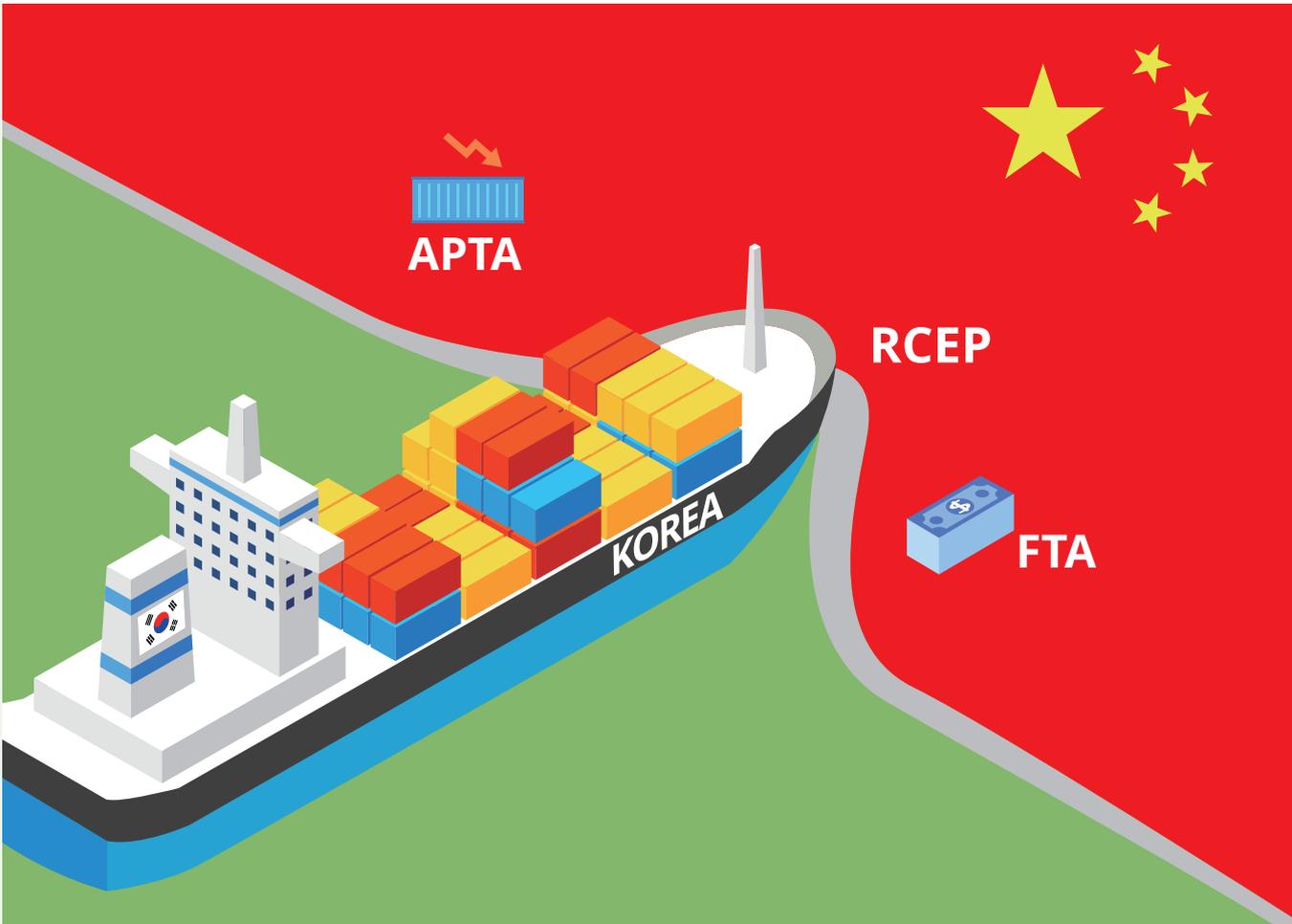
FTA TRADE REPORT

04

FTA ANALYSIS

중국의 대(對)한 주요 수입 품목의 세율 비교·분석





중국의 대(對)한 주요 수입 품목의 세율 비교·분석



오유진
한국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1975년 방콕협정으로부터 시작된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Asia -Pacific Trade Agreement)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 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협상이다. 협상 초기에는 회원국 간 경제 규모 차이로 인하여 관세 양허 품목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나, 제4라운드에서는 무역 원형화,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어 활용의 폭이 넓어졌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하여 5개국(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APTA에 이어 한-중 FTA와 RCEP 까지 발효되며 본격 1국 다(多)협정 국가로 거듭났다. 그 결과 현재 중국으로 수출 시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특혜 세율은 세 종류(APTA, 한-중 FTA, RCEP)로 품목마다 적용되는 특혜 세율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대(對)중 2023년 주요 수출 품목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2024년 중국 APTA 세율과 FTA 협정 세율 비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특혜 세율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1국 다협정 적용 가능 국가

발효			
국가	특혜협정	국가	특혜협정
중국	APTA, 한-중 FTA, RCEP	베트남	한-ASEAN FTA, 한-베트남 FTA, RCEP
인도	APTA, 한-인도 CEPA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한-인도네시아 CEPA, RCEP
뉴질랜드	한-뉴질랜드 FTA, RCEP	캄보디아	한-ASEAN FTA, 한-캄보디아 FTA, RCEP
ASEAN(6개국 ¹⁾)	한-ASEAN FTA, RCEP	싱가포르	한-ASEAN FTA, 한-싱가포르 FTA, RCEP

주 1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한-필리핀 FTA 타결, 2021.10.26.)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일반 세율, 최혜국(MFN) 관세율, 잠정 세율, 특혜 세율, 협정 세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관세의 적용은 탄력 관세(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등) → 협정 세율(FTA 관세, APTA 관세 등) → 할당 관세 → 특혜 세율 → 잠정 세율 → 일반 세율의 순으로 부과된다.



잠정 세율과 특혜 세율 및 협정 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단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잠정 세율이 기본 세율보다 높더라도 기본 세율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표 2] 중국의 주요 수입 관세율

종류	범위
협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규정되는 우대 관세율로, 일반적으로 최혜국 세율보다 낮고 협정이나 조약의 유효 기간 내 조약 동 의 없이는 세율의 자동 갱신이나 폐지가 불가능함 •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 물품에 적용하는 FTA 세율 및 APTA 협정에 따라 APT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 대한민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협정 관세율
할당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 관세는 수입 물품의 일정 할당량(Quota)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쿼터 내의 수량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부과하고 쿼터외의 수량에 대해서 고세율을 부과하는 탄력 관세의 일종임
특혜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국가 및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수 관세로서 최혜국 원칙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혜국 원칙을 근거로 특혜 세율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음 • APTA 2개국(라오스, 방글라데시)과 아세안 4개국(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최빈국 40개국이 포함됨
잠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임시'로 적용하는 관세율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 중 잠정 세율이 있는 경우 MFN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
최혜국(MFN)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 대우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
일반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율, 협정 관세율 또는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자료: 중국해관총서, 중국 재정부 등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중국의 대(對)한 주요 수입 품목의 APTA vs FTA (RCEP 포함)

아래 [표 3]은 2023년 기준 중국의 대(對)한 수입 금액 상위 100대 품목(HS 8단 위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품목 일부를 선별(31개 품목)하여 나열한 것이다.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은 1개, FTA(RCEP 포함) 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은 16개로 나타났으며, APTA와 FTA 적용 세율이 동일한 품목은 2개, 잠정 세율 적용 품목은 2개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품목(HS 8단위) 기준 잠정 세율 등 두 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품목은 10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중국의 대(對)한 주요 수입 품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2023년 기준 중국의 대(對)한 수입 금액 상위 100대 품목 중 분석 대상 품목 ¹⁾							
APTA (1개)				FTA(RCEP 포함) (16개)			
1	22029900			1	19023030	9	39074000
APTA=FTA (2개)				2	27132000	10	39201010
1	39014090	2	84081000	3	32049090	11	39206200
잠정세율 (2개)				4	32089090	12	74102110
1	27101220	2	74031111	5	39013000	13	76061259
동일 품목 내 세율 확인 필요 품목 (10개)				6	39023010	14	84099910
1	21069090	6	39199090	7	39033090	15	84818040
2	35069190	7	39269090	8	39069090	16	85021320
3	38249999	8	74040000				
4	39011000	9	85076000				
5	39012000	10	85371090				

주 1: MFN 0%로 협정 세율 활용 실익이 없는 품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APTA, FTA 등 2가지 이상의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함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다음의 [표 4]는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1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중 FTA를 적용했을 때보다 13.3%p의 세율 차이를 보여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APTA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중국 HS코드	품목명	MFN	협정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천 불)
			APTA	한-중 FTA	RCEP	
22029900	Other	5	4.2	17.5	-	184,089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의 [표 5]는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FTA(RCEP 포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16개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APTA를 적용했을 때보다 0.1%p~4.6%p의 세율 차이를 보여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FTA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중국 HS코드	품목명	MFN	협정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천 불)
			한-중 FTA	RCEP	APTA	
19023030	Instant or quick-cooking noodles	10	7.5	-	8.7	214,594
27132000	Asphalt	8	2.6	5.6	5.6	731,702
32049090	Other	6.5	0	0	4.2	207,236
32089090	Other	10	5	8.5	9	188,774
39013000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6.5	5.9	-	6	1,023,781
39023010	Ethylene-propylene copolymer (ethylene-propylene rubber)	6.5	2.1	4.6	6	242,221
39033090	Other	6.5	3.2	5.5	6	348,091
39069090	Other	6.5	0	4.6	6	579,968
39074000	Polycarbonate	6.5	2.1	4.6	6.1	455,663
39201010 ¹⁾	Battery separator made of polymer of ethylene	6.5△3	0	4.6	4.2	236,015
39206200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6.5	2.1	4.6	4.6	561,728

중국 HS코드	품목명	MFN	협정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천 불)
			한-중 FTA	RCEP	APTA	
74102110	Copper-clad board used to print circuit	4	0	0	2.6	221,693
76061259	Other	6	2	4.2	3.9	551,356
84099910	For marine propulsion engines	5	1.6	3.5	3.3	202,906
84818040 ¹⁾	Other valves	7△5,1	0	0	4.6	234,979
85021320	Of an output exceeding 2 MVA	10	5	8.5	7	192,218

주 1: 잠정 세율 적용 품목이나 FTA(RCEP) 활용 실적이 있는 품목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 6]은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APTA와 한-중 FTA 적용 세율이 동일한 품목 2개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APTA와 한-중 FTA의 특혜 관세율은 동일하다.

[표 6] APTA와 FTA가 동일한 세율인 경우

중국 HS코드	품목명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천 불)
		MFN	APTA=FTA	
39014090	Other	6.5	4.2	773,982
84081000	Marine propulsion engines	5.0	2.5	581,819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 7]은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2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HS 2710.12-20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APTA나 FTA를 적용했을 때보다 잠정 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2%p~5.4%p의 세율 차이를 보여 보다 유리하며, HS 7403.11-11은 잠정 세율과 FTA 특혜 관세율이 동일하다.

[표 7] 잠정 세율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중국 HS코드	HS 8단위 품목명	MFN	잠정 세율	협정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천 불)
				APTA	한-중 FTA	RCEP	
27101220	Naphtha	6	0	5.4	2	4.2	1,435,981
74031111	Containing at least 99.9935% of copper by weight	2	0	1	0	0	1,385,482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작성

다음 [표 8]¹⁾은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관세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품목을 보여 준다. 품명에 기재된 특정 상품 범위의 품목에 한정하여 MFN 과 잠정 세율이 구분되어 적용된다.

동일한 HS 8단위지만 상품의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해지는 품목이므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FTA C/O 발급 대상 품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8-1] HS 8단위 기준 2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품목(세율)

구분	중국 HS코드	ex ¹⁾	MFN	잠정	APTA	한-중 FTA	RCEP	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FTA/MFN	35069190		10		7	0	7	207,649
			0 ²⁾		7	0	7	
	39199090		6.5		4.6	2.1	4.6	479,608
			0 ²⁾		4.6	2.1	4.6	
APTA/잠정	21069090		12		11	18.4	20	224,595
		ex	12	0	11	18.4	20	

1) 동일 품목에 대하여 [표 8-1]은 세율 위주로, [표 8-2]는 품목명 위주로 작성함

구분	중국 HS코드	ex ¹⁾	MFN	잠정	APTA	한-중 FTA	RCEP	23년 대(對) 한 수입 금액
	85076000		10		8	9.6	-	320,417
		ex	10	1	8	9.6	-	
FTA/잠정	38249999		6.5		4.2	2.1	4.6	1,145,934
		ex	6.5	3	4.2	2.1	4.6	
		ex	6.5	0	4.2	2.1	4.6	
	39011000		6.5		6	5.9	-	275,797
		ex	6.5	3	6	5.9	-	
	39012000		6.5		6	5.9	-	812,330
		ex	6.5	3	6	5.9	-	
	39269090		10		6.5	0	7	185,156
		ex	10	0	6.5	0	7	
	74040000		1.5		0.8	0	0	584,011
		ex	1.5	0	0.8	0	0	
	85371090			8		4	2.8	6.7
ex			8	4	4	2.8	6.7	
ex			8	1	4	2.8	6.7	

주 1 : ex 품목은 HS 8단위 이하 특정 상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의미함

주 2 : ITA 세율 적용 품목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특히 HS 3824.99-99와 HS 8537.10-90은 특정 상품의 범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잠정 세율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HS 3824.99-9999는 기타의 화학공업 생산품으로 8단위 이하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상품이 5개로 세분화²⁾되어 있다.

즉 상품의 범위에 따라 적용받는 잠정 세율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할 시 상품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2) 잠정 세율 0% 적용 품목 : ①폴리아미드 생산용 발효액(중략), ②골드 카본(Gold carbon) ③티타늄 슬래그(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잠정 세율 3% 적용 품목 : ①산화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혼합물, ②니켈 코발트 수산화물



[표 8-2] HS 8단위 기준 2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품목(품명)

구분	중국 HS	ex	품명	비고
FTA/MFN	35069190		Other	조제 접착제
			Optically clear film adhesives and light-curing liquid adhesives used exclusively or primarily in display or touch screen manufacturing1)	
	39199090		Other	접착성 슈트·테이프
			Self-adhesive circular polishing pad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 wafer1)	
APTA/잠정	21069090		Other	기타 조제 식료품
		ex	Non-dairy-based infant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non-dairy-base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85076000		Lithium ion	리튬이온 축전지
ex		Lithium-ion battery for aircraft		
FTA/잠정	38249999		Other	기타 화학공업 생산물
		ex	Fermentation broth used to produce polyamide (containing amino acids, organic acids, organic amines, organic alcohols, nucleotides, polysaccharides, etc.)	
			Gold carbon	
			High titanium slag (containing more than 70% of titanium dioxide by weight)	
	ex	Mixtures containing 50% or more zinc oxide by weight		
		Crude nickel cobalt hydroxide		
39011000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less than 0.94	폴리에틸렌	
	ex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less than 0.94, in primary forms (CIF)USD3800/ ton)		

구분	중국 HS	ex	품명	비고
FTA/잠정	39012000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0.94 or more	폴리에틸렌
		ex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0.94 or more, in primary forms (CIF)USD3800/ ton	
	39269090		Other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
		ex	Polyurethane condom	
	74040000		Copper waste and scrap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ex	Recycled brass-copper raw materials	
	85371090		Other	전기제어용 보드·패널
		ex	Control cabinet (electric cabinet) for elevators and circuit board for control cabinet	
		ex	Aircraft control module(for the circuit with its voltage≤1000V)	

주 1: ITA 세율 적용 품목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이상으로 대(對)중 2023년 주요 수출 품목 중 APTA 세율과 FTA 협정 세율 등의 비교를 통해 활용 가능한 특혜 세율을 분석하여 보았다.

맺음말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수교를 체결한 이후 APTA와 한-중 FTA, 그리고 RCEP까지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으로 수출 시 다수의 품목이 MFN보다 낮은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잠정 세율 등을 통해 수입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입 관세율을 설정하여 복잡한 세율 적용 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의 산업 동향과 정책 기조 등에 따라 변동되는 관세율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FTA TRADE REPORT

05

해외 통상 애로

2024 수출입 관세 조정 활용 방안

- 중국을 중심으로 -





2024 수출입 관세 조정 활용 방안 - 중국을 중심으로 -



황수한
한국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1.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 동향

중국 경제는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내·외부 불확실 요인으로 인하여 2024년 경제 성장률은 살짝 더딘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 화장품·신발·의류 품목에 대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상승하였고, 특히 자동차 소비 증가율이 개선되면서 코로나 충격으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개선 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6월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됨과 동시에,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한-중 FTA는 올해 10년 차를 맞이하였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 대한민국 수입 71% 품목(2012년 협상 당시 HS 8단위 품목 수 기준)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다수의 품목이 MFN 세율보다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3년에는 잠정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4년에는 MFN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품목을 예로 들면, 한국산에 적용하는 한-중 FTA 세율은 2024년의 MFN 세율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잠정 세율보다도 수입 관세율이 낮다.

관세청에 따르면, 변경된 세번·품목분류 착오·유리한 세율 적용 불인지 문의 등으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수출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세율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내 대중국 수출기업은 복잡한 중국 관세율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품목군들 중 특히,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을 취급하는 국내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세율 변동 비교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법(2024)」이 공포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3년 대비 수입 관세율 변화 등을 살펴보고, 우리 수출 기업들의 대중 교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2. 중국 수입 관세 변화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2024년판 관세 조정 방안과 수출입 세칙에 따라 수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첫 번째로 2024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가 조정되었다.

* 전년도(2023년) 대비 9개 증가(8,948개 → 8,957개)

세부적으로는 (1)장식원지(装饰原纸)와 식물성 단백질 세목, (2)이산화티타늄, 비



합금강판압연재, 철도용·궤도용 기관차 부품 등의 HS코드를 조정 및 구체화, (3)무선전화기(HS 8517.7930)의 명칭을 “스마트폰 및 기타 무선전화기”로, 향료·의료용 식물의 주석을 수정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2024년부터 중국의 HS 코드(세번)이 변경되어 기업들이 수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한 품목

연번	조정 내용	품목	2023년판 HS코드	2024년판 HS코드
1	세목 추가	장식원지 (装饰原纸)	HS 4805.9190 (기타)	HS 4805.9120 (장식원지)
2	구체화, 세목 추가	식물성 단백질	HS 3504.0090 (기타 펩톤)	HS 3504.0020 (식물성 단백질)
3	HS코드 조정, 세목 추가	이산화티타늄	HS 3206.1110	루타일 함량 \geq 99.8%일 경우 HS 3206.1111 기타 제품은 HS 3206.1119
4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08.5120	항복강도 \geq 500N/mm ² 의 제품 HS 7208.5121 기타 제품 HS 7208.5129
5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08.5190	항복강도 \geq 500N/mm ² 의 제품 HS 7208.5191 기타 제품 HS 7208.5199
6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09.1690	신장률 \geq 40%의 제품 HS 7209.1691 기타 제품 7209.1699
7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09.1790	신장률 \geq 38%의 제품 HS 7209.1791 기타 제품 7209.1799
8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10.4900	인장강도 \geq 440N/mm ² 의 제품 HS 7210.4910 기타 제품 HS 7210.4990
9		철도용·궤도용 기관차 부품	HS 8607.9900	차체·새시 루프·페달용 제품 HS 8607.9910 기타 제품 HS 8607.9990

자료: 2024년 수출입 세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둘째로, 잠정 수입 관세가 변동된 품목이 발생하였다. 주로 농수산물, 자원형 제품, 의약품 및 원료 등에서 '0%'의 잠정 수입 관세율 혹은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의 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2024년 기준 총 1,010개이며 산업 고도화 수요에 맞춰 자원형 제품, 의약품 및 원료, 첨단 제조 설비 및 부품은 물론 임플란트 등 의료 기기, 농수산 식품, 기저귀, 스키 용품, 삼푸 등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용·재배용 종자(단옥수수, 고수, 우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에 발맞춰 0%의 잠정 세율을 적용하며, 유제품을 주요 단백질 원료로 하는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역시 0% 잠정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수출 기업들이 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유리하게 수출할 수 있는 품목

(단위: %)

연번	HS CODE	품목	2024년 MFN 세율	2024년 잠정 세율
1	0712.90.99	재배용 단옥수수	13	0
2	0909.21.00	재배용 고수	15	0
3	1211.90.39	재배용 우엉	6	0
4	1901.90.00	유제품을 주요 단백질 원료로 한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10	0
5	2529.21.00	형석(불화칼슘 함량 ≤97%, 비소 함량 ≤0.0005%)	3	0
6	2529.22.00	형석(불화칼슘 함량 >97%, 비소 함량 ≤0.0005%)	3	0
7	2827.39.10	염화리튬	5	0
8	2844.43.90	항암제 원료	5	0
9	2845.90.00	항정신성 의약품 원료	5	0
10	2845.90.00	항암제 원료	5	0
11	2921.49.90	항우울제 원료	6.5	0
12	2932.99.90	항암제 원료	6.5	0
13	2933.19.90	항암제 원료	6.5	0



연번	HS CODE	품목	2024년 MFN 세율	2024년 잠정 세율
14	2937.50.00	희귀병 치료제 원료	4	0
15	3823.19.00	식물성 기름 탈취 증류물(DD유)	16	10
16	3824.99.99	조제 수산화니켈코발트	6.5	0
17	6815.13.90	연료전지용 가스확산층	17	9
18	8112.92.10	게르마늄	3	1
19	8112.92.30	인듐	3	1
20	8112.99.10	게르마늄 제품	3	1
21	8112.99.30	인듐 제품	8	1
22	8482.10.10	절연 자동 조심 볼 베어링 (고속철도용)	8	4
23	8502.20.00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는 점연식 내연기관 발전기 모듈	10	5
24	8524.91.90	터치스크린 액정 모듈 (태블릿 PC와 노트북 전용)	5	0
25	8539.32.40	노광공정 설비용 수은램프 (출력 ≥ 1kW)	8	4
26	9032.89.90	노광공정 설비용 전기장치 제어기	7	3

자료: 2024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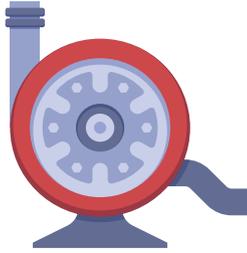
한편 2023년에는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MFN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역시 존재한다. 농수산 식품(은행 열매), 석탄류, 에틸렌 등 화학 제품, 유리 제품과 기계 설비 및 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잠정세율보다 높은 MFN세율을 적용하여 수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품목

(단위: %)

연번	HS CODE	품목	23년 잠정세율	24년 MFN세율
1	0802.99.10.	은행 열매	20	25
2	2701.11.00.	무연탄	0	3
3	2701.12.10.	코크스탄	0	3
4	2701.12.90.	기타 유연탄	0	6
5	2701.19.00.	기타 석탄	0	5
6	2701.20.0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 등	0	5
7	2702.10.00.	미응결 갈탄	0	3
8	2702.20.00.	응결형 갈탄	0	3
9	2705.00.00.	석탄가스/수성가스 등	1	5
10	2901.21.00.	에틸렌	1	2
11	2901.22.00.	프로필렌	1	2
12	2905.32.00	프로필렌글리콜	3	5.5
13	2926.10.00	아크릴로니트릴	3	6.5
14	2930.40.00	메티오닌	5	6.5
15	3801.10.00	인조흑연	3	6.5
16	3902.10.00	폴리프로필렌	3	6.5
17	3907.70.00	폴리락트산	3	6.5
18	7006.00.00	액정 유리 기판 6세대 (1,850mm×1,500mm) 및 그 이하	6	10
19	7014.00.90	신호용 유리 제품	9	15
20	7018.90.00	유리 의안/유리 장식품	10	15
21	7020.00.11	전도성 유리	7	10
22	8112.92.20	바나듐질소합금 (분말/스크랩 포함)	0	3
23	8408.20.90	세단(출력 ≥ 50kW)용 디젤 엔진	20	25
24	8413.60.40	스크류 회전 펌프	6	10



연번	HS CODE	품목	23년 잠정 세율	24년 MFN 세율
25	8414.10.00	진공 펌프 (반도체 제조용 제외)	5	8
26	8414.90.20	팬/통 풍커버/순환기 커버 부품	6	7
27	8416.20.90	브롬화리튬 에어컨용 복식 연소기	5	10
28	8417.80.90	열분해로	5	10
29	8433.59.20	면화 수확기	5	8
30	8449.00.20	스핀레이스 설비	6	8
31	8478.90.00	연(담배)초 가공설비 부품	5	8
32	8482.99.00	롤러 베어링의 기타 부품	3	6
33	8483.30.00	볼/롤러 베어링 미장착 베어링 홀더	4	6
34	8531.80.90	항공기용 스트로보 램프	상반기: 1 하반기: MFN 0	0
35	8708.40.99	기타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토크컨버터	3	6
36	8708.40.99	기타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알루미늄 밸브	3	6

자료: 2024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3. 중국 해관총서 정책 방향

중국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분절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세 둔화가 수출 개선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아세안 회원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관련 국가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T 경기가 개선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고 신에너지자동차,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IT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개선되면서 관련 중간재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역 수지는 수출과 수입 모두 반등하면서 전년 수준의 흑자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상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변화 확대, 중국 제조 기업의 현지 생산 추진(동남아시아 등)과 같이 중국 수출입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수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4. 중국과 교역 시 유의 사항

에틸렌, 프로필렌 등 화학 제품, 진공 펌프, 면화 수확기 등 기계 설비는 잠정 수입 관세율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2024년에는 MFN 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실상 수입 관세율이 인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국내 수출 기업들은 세율 변동을 유의하며 FTA를 활용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 산업 상황에 맞춰 수입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중국 산업 동향과 정책 기조를 예의 주시해야 하며 중국 내 수급, 산업 발전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FTA TRADE REPORT

06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홍삼(蔘)제품의 품목 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PART

06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홍삼(蔘)제품의 품목 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변달수
다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1. 들어가며

산삼은 예로부터 귀한 취급을 받았다. 일례로 현대 창업주 고(故) 정주영 회장의 산삼 사랑은 유명하다. 80년대 유명한 심마니였던 김영택 심마니는 그 당시 여섯 줄기를 가진 산삼 6구를 캐는데, 그 길이가 무려 1m 30cm나 되고 최소 650년이 넘은 자연산 산삼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심마니가 있던 강원도 인제까지 직접 간 정주영 회장은 이 산삼을 먹기 위해 7,800만 원의 현금을 일시불로 지불했다고 한다. 그 당시 7,800만 원의 가치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34평 기준)를 4채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대기업 대졸 신입 사원이 당시 월급(30만 원)을 1원도 쓰지 않고 약 21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이었다.

이처럼 산삼은 귀하고 비싸서 현재까지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신 우리에게는 인삼이라는 선택권이 있다. 사실 인삼과 산삼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품종이다. 산삼의 씨앗을 받아 집 주변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인삼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새는 인삼뿐만 아니라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홍삼 제품들이 인기이다. 인삼 뿌리를 수확한 후 고온에서 찌서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특유의 적갈색을 띠고 화학적 조성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홍삼이다. 일반 인삼은 일반적으로 약간 쓴맛과 흙냄새가 나며 더 단단하고 섬유질이 많은 질감인데 비해, 홍삼은 맛이 달고 쓴맛이 적어 흔히 일반 인삼보다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2022년 식약처의 국내 식품 생산 실적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전체 생산 실적 2조 8,050억 중 홍삼은 부동의 1위(점유율 21%, 5,896억)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건강 기능 식품인 홍삼에 대해, 주요 홍삼 제품류의 품목 분류 후 실제 예시를 들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해설해 보기로 한다.





2.

홍삼 제품의 품목 분류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가. 홍삼 제품의 상품 구색

홍삼 제품은 제형, 포장 방법, 가공 방법, 첨가물 유무 등에 따라 그 상품 구색이 다양해진다. 예를 들어 홍삼이 포함된 제품으로는 홍삼, 홍삼정과, 홍삼절편, 홍삼캡슐, 홍삼캔디, 홍삼젤리, 홍삼농축액, 홍삼생기력, 홍삼차, 홍삼환, 홍삼공지환, 홍삼음료, 홍삼비타민 등이 있다.

나. 홍삼 제품의 품목 분류

(1) 홍삼의 품목 분류

홍삼의 경우 아래와 같이 품목 분류 체계로 구성된다.

〈표 1〉 홍삼의 HSCODE 분류 체계

HS CODE	12	11	20	1391
2단위(류)	채유용 종자 및 과실 등			
4단위(호)	향료/의료용 식물성 생산품			
6단위(소호)	인삼			
10단위(HSK)	홍삼(본삼)			

관세율표 제12류에서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이 분류되며, 제1211호에서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된다. 제1211.20호에서는 인삼, 백삼, 홍삼, 인삼 가루, 인삼 잎, 인삼 줄기, 코카 잎, 양귀비 줄기, 마황, 아르피카 체리 등이 분류되며, 제1211.20-1319호에서는 홍삼의 원물이 분류된다.

(2) 홍삼 제품의 품목 분류

홍삼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아래의 [표 2]와 같이 분류된다.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 수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세 환급액으로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홍삼 제품류도 있

으니 확인하여 홍삼을 제조해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이용하는 관세사를 통해 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표 2〉 주요 홍삼 제품류의 HSCODE 분류 체계

제품명	HS CODE	간이정액환급액	비고
홍삼	1211.20-1391	비대상	-
백삼	1211.20-1211	비대상	-
홍삼정과	2008.99-9000	비대상	-
홍삼절편	2008.99-9000	비대상	-
홍삼캡슐	1211.20-2220	10원	-
홍삼캔디	1704.90-2090	10원	-
홍삼젤리	2106.90-3029	10원	-
홍삼농축액	1302.19-1210	10원	-
홍삼생기력	2202.99-9000	10원	-
홍삼차(과립형)	2106.90-3021	10원	-
홍삼환	2106.90-3029	10원	-
홍삼공지환	2106.90-9099	10원	-
홍삼음료	2202.99-1000	10원	-
홍삼비타민	2106.90-3029 (기타 홍삼 제품류) 2106.90-9099 (기타 조제 식료품)	10원	성분 및 함유량에 따라 결정





(3) 주요 쟁점 사례(홍삼비타민)¹⁾

우리나라는 국내 인삼 산업, 특히 국내 홍삼 산업을 외국산 저가 홍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7년 이후 홍삼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 결과 수입의 경우 수입 물품이 홍삼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외 일반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표 2]에서 보이듯 홍삼비타민의 경우 성분 및 함유량에 따라 HS CODE를 결정할 수 있다. 홍삼비타민 고세율 품목 분류 적용례와 관련하여 2017년도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7관0072)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수입자는 Red Ginseng Vitamin을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로 수입 신고하여 수리 받았으나, 처분청이 HSK 2106.90-3029호(기타 홍삼제품류)로 세율을 적용하여 고세율로 과세 처분되었다.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는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거 ‘주’와 ‘호의 용어’로 분류한다. 따라서 물품명에 ‘Red Ginseng’이 들어가 있으면 ‘기타 조제식료품’이 속하는 세번 보다는 ‘기타 홍삼제품류’로 분류하는 것이 일견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결정 기관은 다음의 요지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주요 결정 요지를 파악해 보자면 홍삼 성분을 첨가한 발포비타민(Red Ginseng Vitamin)인에 대해 홍삼 성분이 주가 아닌 홍삼 성분을 첨가한 발포비타민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 물품의 주요 성분인 홍삼과 비타민 B12 중 쟁점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 호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 물품의 활성 성분인 홍삼과 비타민 B12의 경우 1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할 때 비타민 B12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물품을 HSK 제2106.90-9099호(기타 조제식료품)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결정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있다. 홍삼 제품의 경우에는 단독 제품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비타민, 음료, 캔디, 캡슐 등의 제품에 첨가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홍삼(Red Ginseng)’이라는 글자가 물품명에 들어간다고 ‘홍삼 제품’의 HS CODE로 무조건적으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1) 조심2017관0072

홍삼 제품의 경우 물품의 성질, 용도, 수량, 가격, 함유량, 구성 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품목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주요 홍삼 제품의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홍삼 제품류 중에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홍삼캔디와 홍삼음료에 대해 주요 협정국과의 예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해석하고자 한다.

가. 홍삼캔디(제1704.90호, 한-미 FTA)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HS CODE 제1704.90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A change to heading 17.04 from any other heading.)’으로 하여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으로 하고 있다. 4단위 세번 변경 기준(CTH)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전부의 4단위 호와 완제품의 4단위 호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표 3】 홍삼캔디의 BOM 예시

품명(재료명)	세번(HS)	원산지
홍삼캔디(완제품)	17 04.90	?
농축홍삼액	13 02. 19	미상
물엿	17 02.90	미상
말티톨시럽	38 24.90	미상
아스파탐	29 24.90	미상
합성착향료	21 06.90	미상
카라멜색소	21 06. 90	미상





상기의 홍삼캔디의 BOM 예시를 보면, 농축홍삼액(제1302.19호)부터 카라멜 색소(제2106.90호)까지 비원산지 원재료 전부의 4단위 호와 완제품인 홍삼캔디(1704.90)의 호가 전부 상이하다. 이 경우 [표 3]의 홍삼캔디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타 제반 원산지 요건이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원산지 결정 기준이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아닌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라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단위 세번 변경 기준(CC)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전부의 2단위류와 완제품의 2단위류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사례에서 물엿(17류)의 경우 완제품인 홍삼캔디(17류)와 세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번 변경'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 미충족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라도 몇 가지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협정상 미소 기준(최소 허용 기준) 적용, 물엿에 대한 거래처를 한국산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거래처로 변경 등이 있으며, 후술은 생략한다.

또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아닌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라면 원산지 결정 기준은 자동으로 충족한다. 세번 변경 기준의 경우 2단위에서 4단위로, 4단위에서 6단위로 갈수록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나. 홍삼음료(제2202.90호, 한-EU FTA)

한-EU FTA 협정문에서는 HS CODE 제2202.90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4〉 홍삼음료의 원산지 결정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 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일 것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in which all the fruit juice used (except that of pineapple, lime or grapefruit) of heading 2009 is originating, and -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subheadings 1211 20 and 1302 19 used are wholly obtained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단일 기준인 반면, 한-EU FTA의 홍삼음료의 경우 [표 4]에서 설명하고 있는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합 기준이어서 꽤나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표 5]의 예시를 통해 [표 4]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해석할 수 있다.

〈표 5〉 홍삼음료의 BOM 예시

품명(재료명)	세번(HS)	원산지	소요량	가격
인삼	1211.20	KR	8.6g	355
영지	0712.39	KR	10.6g	300
대추	0813.40	KR	27.2g	120
구연산	2918.14	미상	1.3g	20
니코틴산아미드	2936.29	미상	0.5g	10
비타민C	2936.27	미상	0.3g	8
카라멜	1702.90	미상	1.0g	8
액상과당	1702.50	미상	1.0g	8
수크랄로스	2932.19	미상	0.2g	70
허브향(인삼)	2106.90	미상	0.2g	30



품명(재료명)	세번(HS)	원산지	소요량	가격
유리병	7010.90	미상	10ea	800
캡	8309.90	미상	10ea	270
라벨	4821.10	미상	10ea	120
홍삼음료 FOB가격 : 3,300		홍삼음료 EXW가격: 3,000		

①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단위 세번 변경 기준(CTH)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인삼, 영지, 대추의 경우 원산지(한국산)재료이므로 4단위 세번 변경 여부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 원산지가 미상인 비원산지 원재료 전부의 4단위 호와 완제품인 홍삼음료(제 2202.90호)의 호가 전부 상이하다. ① 기준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17류에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MC 30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MC법이란 역외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비원산지 재료/공장도 가격(EXW)]*100으로 계산한 값이 기준치 보다 낮아야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본 사례에서는 17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카라멜(17류, 8원)과 액상과당(17류, 8원)으로 총 2개이다. 17류 MC 값을 구해 보면, [16원/3,000원(EXW)]*100 = 0.53%의 값이 나오게 되고 이는 기준치(30%)보다 한참 낮으므로 ②기준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일 것

원재료 중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는 원산지 재료가 투입되었는지 따져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BOM상 제2009호 자체가 투입되지 않으므로 ③기준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당연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 재료는 계약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원재료 중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 완전 생산된 한국산 물품인지 따져야 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인삼(제1211.20)이 원재료로 투입되는데, 원산지가 한국산이므로 ④기준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당연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임은 원산지확인서 등으로 서면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기 ①~④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각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홍삼음료의 경우 기타 제반 원산지 요건이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

4.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주요 홍삼 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알아보고 예시를 들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해석해 보았다. 홍삼 제품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함유량, 주성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 분류를 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품목 분류 분쟁 발생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신청하여 수입자는 고세율 추징 리스크를, 수출자는 FTA 원산지 결정 기준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홍삼·인삼 등의 경우 산업 특성상 경작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고 문서 작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작성 및 수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관세청장 고시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증이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기를 바란다.





FTA TRADE REPORT

07

활용하기 쉬운 FTA-PASS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PASS

- 민원 사례를 통한 FTA-PASS 활용 팁 -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PASS

- 민원 사례를 통한 FTA-PASS 활용 팁 -



구본현
한국원산지정보원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으로, 수출/제조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FTA-PASS에서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 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 자료 보관, 사후 검증 대비 등이 가능하다.

원산지 관리를 하다 보면 신규 발효 또는 원산지 기준이 업데이트되는 협정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러한 정보들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PASS를 통해 원산지를 판정할 때 확인하면 좋은 사례들을 살펴보자.

1. 원산지 판정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 수출 물품 및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FTA-PASS에 매입처 및 매출처 정보, 자재명세서(BOM) 정보, 관리해야 하는 물품의 기본 정보·세번·단가 정보를 등록한 다음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다.

원산지 판정은 모든 협정에 대해 수행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 변경 기준(+미소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다. 원산지 판정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한 다음 판정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앞서 입력한 원산지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춰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한다.

세번 변경 기준만을 사용하여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려는 경우 일괄 판정 메뉴의 물품별(생산일) 탭에서 진행한다. 해당 탭은 생산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소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세번 변경 기준과 더불어 미소 기준, 부가가치 기준까지도 원산지 판정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물품별(매출일) 탭에서 진행한다. 해당 탭은 매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며, 원산지확인서 발급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정 매출처를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탭에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다. 원산지 판정이 완료된 건의 물품 수가 40건 이하일 경우, 원



산지포괄확인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선택 발급 버튼이 생성된다. 선택 발급 버튼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다만 물품 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 발급 버튼을 활용할 수 없으며, 원산지확인서 메뉴에서 직접 작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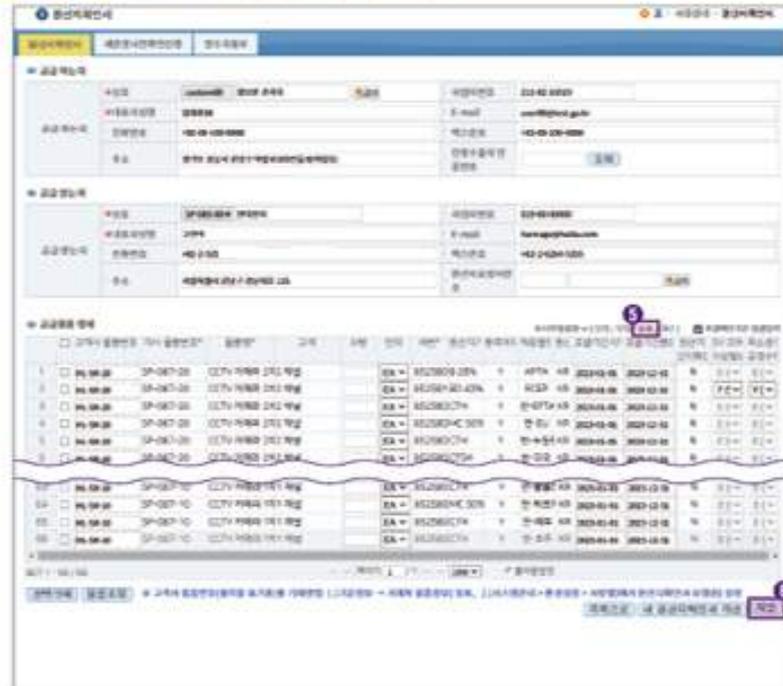
매출처별 원산지 판정 후 서류 발급 과정 이미지

1. [판정관리 > 일괄판정] 메뉴에서 원산지판정 수행



- ① [일괄판정] 메뉴에서 '매출처별' 탭을 클릭
- ② 판정 대상(매출처) 클릭
- ③ '판정시작' 클릭
- ④ '선택발급' 클릭

2.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설정 후 저장



- ⑤ 공급물품 명세 항목의 포괄기간(올해) 클릭
- ⑥ 저장



판정 이력 화면 이미지

종류	APT	EFTA	EU	RCEP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에세안	영국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중미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공통비어	워트카제	베루	호주																																																																																							
원산지판정기준: B 55%																																																																																															
판정대상	· 품목번호	SP-087-10					· 세번	852580 [HS2017]																																																																																							
	· 품목명	CCTV 카메라 1채널																																																																																													
	· 적용협정(수출국기)	APTA(한국)					· 판정일시	2024-02-23 15:36:00																																																																																							
판정결과	· 충족여부	충족					· 자재일품	자재 일품 상세																																																																																							
부가가치기준(충족)																																																																																															
기준	B 55% 이하																																																																																														
결과	16% = (134 / 868) X 100																																																																																														
공식	B = (역외산 재료비 / 제품가격) X 100																																																																																														
비파 사용여부	아니오											· 부가가치 비비율(%)	5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6">역외산</th> <th colspan="6">역외산</th> </tr> <tr> <th>품목번호</th> <th>품목명</th> <th>매입처</th> <th>세번</th> <th>가격</th> <th></th> <th>품목번호</th> <th>품목명</th> <th>매입처</th> <th>세번</th> <th>가격</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SP-087-02</td> <td>렌즈</td> <td>강원전자</td> <td>900211</td> <td>38</td> <td></td> <td>1 SP-087-01</td> <td>카메라모듈</td> <td>Beijing Electron</td> <td>852412</td> <td>44</td> <td></td> <td></td> <td></td> </tr> <tr> <td>2 SP-087-05</td> <td>스위치</td> <td>백영전자</td> <td>853650</td> <td>130</td> <td></td> <td>2 SP-087-03</td> <td>카메라시터</td> <td>French Electron</td> <td>853221</td> <td>27</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3 SP-087-04</td> <td>I/O메모리</td> <td>Tokyo Electron</td> <td>854232</td> <td>33</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4 SP-087-06-1</td> <td>플라스틱 케이스 1U</td> <td>Balhaeman Elec</td> <td>392329</td> <td>3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역외산						역외산						품목번호	품목명	매입처	세번	가격		품목번호	품목명	매입처	세번	가격				1 SP-087-02	렌즈	강원전자	900211	38		1 SP-087-01	카메라모듈	Beijing Electron	852412	44				2 SP-087-05	스위치	백영전자	853650	130		2 SP-087-03	카메라시터	French Electron	853221	27										3 SP-087-04	I/O메모리	Tokyo Electron	854232	33										4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Balhaeman Elec	392329	30			
역외산						역외산																																																																																									
품목번호	품목명	매입처	세번	가격		품목번호	품목명	매입처	세번	가격																																																																																					
1 SP-087-02	렌즈	강원전자	900211	38		1 SP-087-01	카메라모듈	Beijing Electron	852412	44																																																																																					
2 SP-087-05	스위치	백영전자	853650	130		2 SP-087-03	카메라시터	French Electron	853221	27																																																																																					
						3 SP-087-04	I/O메모리	Tokyo Electron	854232	33																																																																																					
						4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Balhaeman Elec	392329	30																																																																																					

정상 판정

종류	APT	EFTA	EU	RCEP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에세안	영국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중미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공통비어	워트카제	베루	호주																																																																																							
원산지판정기준: B 55%																																																																																															
판정대상	· 품목번호	SP-087-10					· 세번	852580 [HS2017]																																																																																							
	· 품목명	CCTV 카메라 1채널																																																																																													
	· 적용협정(수출국기)	APTA(한국)					· 판정일시	2024-02-28 17:26:22																																																																																							
판정결과	· 충족여부	불충족					· 자재일품	자재 일품 상세																																																																																							
부가가치기준(불충족)																																																																																															
기준	B 55% 이하																																																																																														
결과	% = (/ 868) X 100																																																																																														
공식	B = (역외산 재료비 / 제품가격) X 100																																																																																														
비파 사용여부	아니오											· 부가가치 비비율(%)	5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6">역외산</th> <th colspan="6">역외산</th> </tr> <tr> <th>품목번호</th> <th>품목명</th> <th>매입처</th> <th>세번</th> <th>가격</th> <th></th> <th>품목번호</th> <th>품목명</th> <th>매입처</th> <th>세번</th> <th>가격</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SP-087-02</td> <td>렌즈</td> <td>강원전자</td> <td>900211</td> <td>38</td> <td></td> <td>1 SP-087-01</td> <td>카메라모듈</td> <td>Beijing Electron</td> <td>852412</td> <td>44</td> <td></td> <td></td> <td></td> </tr> <tr> <td>2 SP-087-05</td> <td>스위치</td> <td>백영전자</td> <td>853650</td> <td>130</td> <td></td> <td>2 SP-087-03</td> <td>카메라시터</td> <td>French Electron</td> <td>853221</td> <td>27</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3 SP-087-04</td> <td>I/O메모리</td> <td>Tokyo Electron</td> <td>854232</td> <td>33</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4 SP-087-06-1</td> <td>플라스틱 케이스 1U</td> <td>Balhaeman Elec</td> <td>392329</td> <td>3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역외산						역외산						품목번호	품목명	매입처	세번	가격		품목번호	품목명	매입처	세번	가격				1 SP-087-02	렌즈	강원전자	900211	38		1 SP-087-01	카메라모듈	Beijing Electron	852412	44				2 SP-087-05	스위치	백영전자	853650	130		2 SP-087-03	카메라시터	French Electron	853221	27										3 SP-087-04	I/O메모리	Tokyo Electron	854232	33										4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Balhaeman Elec	392329	30			
역외산						역외산																																																																																									
품목번호	품목명	매입처	세번	가격		품목번호	품목명	매입처	세번	가격																																																																																					
1 SP-087-02	렌즈	강원전자	900211	38		1 SP-087-01	카메라모듈	Beijing Electron	852412	44																																																																																					
2 SP-087-05	스위치	백영전자	853650	130		2 SP-087-03	카메라시터	French Electron	853221	27																																																																																					
						3 SP-087-04	I/O메모리	Tokyo Electron	854232	33																																																																																					
						4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Balhaeman Elec	392329	30																																																																																					

오류 판정

만약 구매 단가 메뉴에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자재명세서 메뉴로 이동하여 추가로 정보를 확인한다. 원산지 판정은 자재명세서 기준으로 진행되며, 가장 최신

일자이면서 자재명세서 매입 일자를 초과하지 않는 구매 정보를 호출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자재명세서를 구성할 때 등록된 원재료 정보가 구매 단가 메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원산지 판정 수행 시 불충족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재명세서 메뉴 이미지

완제품

● 물품번호	SP-087-10	· 물품명	CCTV 카메라 1채널		
● 적용시작일 (생산일자)	2024-02-01	· 규격	1 채널	수량 (단위)	1 EA

원재료 및 중간재

	물품번호	물품명	매입처	매입일	소요량	단위
1	SP-087-01	카메라모듈	Beijing Electron	2024-01-31	1	EA
2	SP-087-02	렌즈	강원전자	2024-01-31	1	EA
3	SP-087-03	커패시터	French Electron	2024-01-31	1	EA
4	SP-087-04	IO메모리	Tokyo Electron	2024-01-31	1	EA
5	SP-087-05	스위치	백령전자	2024-01-31	1	EA
6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Balhaeman Elec	2024-01-31	1	EA

보기 1 - 6 / 6 ▶ 즐바폼설정

복사 초기화 수정

자재명세서 정상 등록

완제품

● 물품번호	SP-087-10	· 물품명	CCTV 카메라 1채널		
● 적용시작일 (생산일자)	2024-02-01	· 규격	1 채널	수량 (단위)	1 EA

원재료 및 중간재

	물품번호	물품명	매입처	매입일	소요량	단위
1	SP-087-01	카메라모듈			1	EA
2	SP-087-02	렌즈	강원전자	2024-01-31	1	EA
3	SP-087-03	커패시터	French Electron	2024-01-31	1	EA
4	SP-087-04	IO메모리	Tokyo Electron	2024-01-31	1	EA
5	SP-087-05	스위치	백령전자	2024-01-31	1	EA
6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Balhaeman Elec	2024-01-31	1	EA

보기 1 - 6 / 6 ▶ 즐바폼설정

복사 초기화 수정

자재명세서 오류 등록



구매 단가 메뉴 이미지 1

▶ 구매단가

▶ 물품번호 ▶ 물품명 ▶ 규격

▶ 매입처 ▶ 매입기간 2024-01-28 ~ 2024-02-28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전월 / 당월 / 올해]

▶ 포괄기간 2024-01-01 ~ 2024-12-31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전년도 / 전월 / 당월 / 올해 / 내년 / 전체] 🔍 검색

	<input type="checkbox"/>	물품번호 ▲	물품명	규격	단위	매입기준일	매입처	구매단가	가산조정
1	<input type="checkbox"/>	SP-087-01	카메라모듈	1,024	EA	2024-01-31	Beijing Electron	10	0
2	<input type="checkbox"/>	SP-087-02	렌즈	1인치	EA	2024-01-31	강원전자	38	0
3	<input type="checkbox"/>	SP-087-03	커패시터	700	EA	2024-01-31	French Electron	27	0
4	<input type="checkbox"/>	SP-087-04	IO메모리	128기가	EA	2024-01-31	Tokyo Electron	33	0
5	<input type="checkbox"/>	SP-087-05	스위치		EA	2024-01-31	백령전자	130	0
6	<input type="checkbox"/>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1 유닛		EA	2024-01-31	Balhaeman Electron	30	0
7	<input type="checkbox"/>	SP-087-06-2	플라스틱 케이스 2U 2 유닛		EA	2024-01-31	Balhaeman Electron	50	0
8	<input type="checkbox"/>	SP-087-06-4	플라스틱 케이스 4U 4 유닛		EA	2024-01-31	Balhaeman Electron	100	0

구매 단가 정상 등록

구매 단가 메뉴 이미지 2

▶ 구매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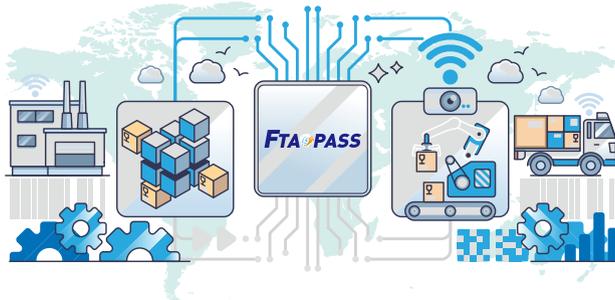
▶ 물품번호 ▶ 물품명 ▶ 규격

▶ 매입처 ▶ 매입기간 2024-01-28 ~ 2024-02-28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전월 / 당월 / 올해]

▶ 포괄기간 2024-01-01 ~ 2024-12-31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전년도 / 전월 / 당월 / 올해 / 내년 / 전체] 🔍 검색

	<input type="checkbox"/>	물품번호 ▲	물품명	규격	단위	매입기준일	매입처	구매단가	가산조정
1	<input type="checkbox"/>	SP-087-01	카메라모듈	1,024	EA	2024-02-07	대구전자	10	0
2	<input type="checkbox"/>	SP-087-02	렌즈	1인치	EA	2024-01-31	강원전자	38	0
3	<input type="checkbox"/>	SP-087-03	커패시터	700	EA	2024-01-31	French Electron	27	0
4	<input type="checkbox"/>	SP-087-04	IO메모리	128기가	EA	2024-01-31	Tokyo Electron	33	0
5	<input type="checkbox"/>	SP-087-05	스위치		EA	2024-01-31	백령전자	130	0
6	<input type="checkbox"/>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1 유닛		EA	2024-01-31	Balhaeman Electron	30	0
7	<input type="checkbox"/>	SP-087-06-2	플라스틱 케이스 2U 2 유닛		EA	2024-01-31	Balhaeman Electron	50	0
8	<input type="checkbox"/>	SP-087-06-4	플라스틱 케이스 4U 4 유닛		EA	2024-01-31	Balhaeman Electron	100	0

구매 단가 오류 등록



3. 부가가치 기준을 활용한 원산지 판정 결과 해석 II

구매 정보에 문제가 없지만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오류 판정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 판정된 물품의 결과는 16%로 APTA 원산지 결정 기준의 B55% 이하에 해당하지만, 오류 판정된 물품의 결과는 %로 퍼센티지 앞의 숫자가 없다. 공식을 살펴보면 $B = (\text{역외산 재료비} / \text{제품 가격}) \times 100$ 인데 결과를 보면 제품 가격 부분이 공란이다. 그럼 판매 단가 메뉴에서 판매 정보를 등록하면 해결된다.

원산지 판정 이미지

총괄표	APTA	EFTA	EU	RCEP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아세안	영국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말레이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	일본	태국	호주					
· 원산지결정기준: B 55%													
· 원장대상	· 물품번호	SP-087-10					· 세번	852580 (HS2017)					
	· 품명명	CCTV 카메라 1채널											
	· 적용협정(수출국가)	APTA(한국)					· 판정일시	2024-02-23 15:36:00					
· 판정결과	· 출국여부	중속					· 자재물품	자재물품 상세					
부가가치기준(중속)													
· 기준	B 55% 이하												
· 결과	16% = (134 / 868) X 100												
· 공식	B = (역외산 재료비 / 제품가격) X 100												
· 비파 사용여부	아니오										· 부가가치 비비율(%)	5	
역외산													
	물품번호	물품명	매입처	세번	가격	역외산							
1	SP-087-02	렌즈	강원전자	900211	38	1	SP-087-01	카메라모듈	Beijing Electron	852412	44		
2	SP-087-05	스위치	백영전자	853650	130	2	SP-087-03	카메라시터	French Electron	853221	27		
						3	SP-087-04	IC메모리	Tokyo Electron	854232	33		
						4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Balhaeman Elec	392329	30		

정상 판정

총괄표	APTA	EFTA	EU	RCEP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아세안	영국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말레이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	일본	태국	호주					
· 원산지결정기준: B 55%													
· 원장대상	· 물품번호	SP-087-10					· 세번	852580 (HS2017)					
	· 품명명	CCTV 카메라 1채널											
	· 적용협정(수출국가)	APTA(한국)					· 판정일시	2024-02-26 18:24:03					
· 판정결과	· 출국여부	중속					· 자재물품	자재물품 상세					
부가가치기준(중속)													
· 기준	B 55% 이하												
· 결과	% = (100 /) X 100												
· 공식	B = (역외산 재료비 / 제품가격) X 100												
· 비파 사용여부	아니오										· 부가가치 비비율(%)	5	
역외산													
	물품번호	물품명	매입처	세번	가	역외산							
1	SP-087-02	렌즈	강원전자	900211		1	SP-087-01	카메라모듈	Beijing Electron	852412	10		
2	SP-087-05	스위치	백영전자	853650		2	SP-087-03	카메라시터	French Electron	853221	27		
						3	SP-087-04	IC메모리	Tokyo Electron	854232	33		
						4	SP-087-06-1	플라스틱 케이스 1U	Balhaeman Elec	392329	30		

오류 판정



만약 판매 단가 메뉴에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누락된 정보나 잘못 등록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매출일(2024-02-28)은 자재명세서 메뉴의 생산일(2024-02-01) 이후에 발생해야 하며, 가격 기준은 협정에 올바르게 넣어야 한다. EXW 가격 기준을 사용하는 협정은 EFTA, EU, 튀르키예,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이며 FOB 가격 기준을 사용하는 협정은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콜롬비아, 인도, 중국, 베트남, ASEAN, 페루, 뉴질랜드, 중미, APTA,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다.

판매 단가 정상 등록

▶ 판매단가

· 물품번호 SP-087-10 · 물품명 · 규격

· 매출처 한라전자 · 매출기간 2024-01-28 ~ 2024-02-28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전월 / 당월 / 올해]

<input type="checkbox"/>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단위	매출일	매출처	EXW 가격	FOB 가격
<input type="checkbox"/>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2024-02-28	한라전자	724	868

판매 단가 오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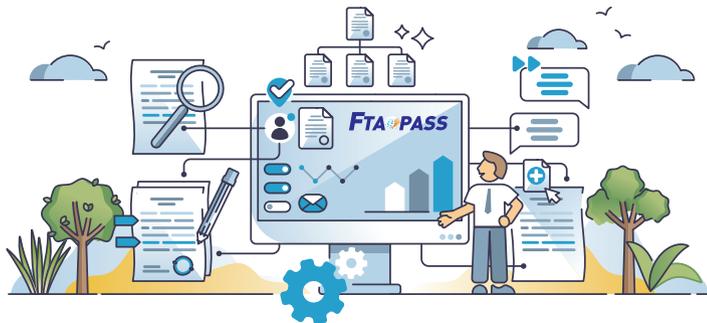
▶ 판매단가

· 물품번호 SP-087-10 · 물품명 · 규격

· 매출처 한라전자 · 매출기간 2024-01-28 ~ 2024-02-28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전월 / 당월 / 올해]

<input type="checkbox"/>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단위	매출일	매출처	EXW 가격	FOB 가격
<input type="checkbox"/>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2024-02-28	한라전자	724	

이처럼 원산지 판정이 불충족으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등록된 정보만 다시 살펴 보면 충분히 원산지 판정이 충족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활용 사례와 같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관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겠다.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1. FTA-PA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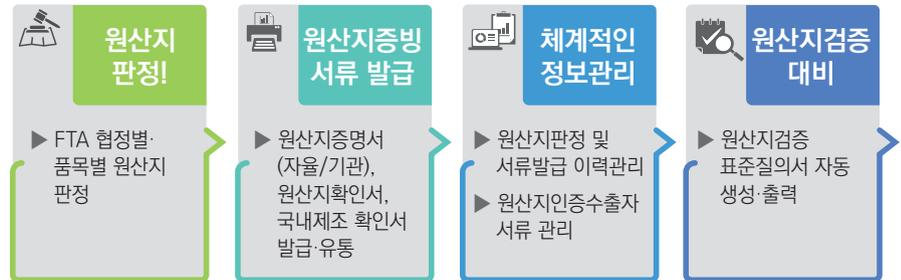
■ 시스템 개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2. FTA-PASS 주요기능



3. FTA-PASS 활용 유형

기본형	수출 (재고관리기능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관리기법(월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비를 산출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출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13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수출/국내공급 (재고관리기능 미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비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간편형	국내공급 (영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체험형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 - 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8:00~17: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





FTA TRADE REPORT

08

원산지 관리, 현장의 목소리

원산지인증수출자 오류 사항과 개선 방안





원산지인증수출자 오류 사항과 개선 방안



황남재
한국원산지정보원 서울이행지원센터
센터장

I. FTA 특혜 조건과 원산지 증명

FTA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여 자유 무역을 실현하려는 협정으로 2024년 1월 기준 우리나라는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하였다.

인증수출자제도는 2006년 한-EFTA로 소개되었고, 중요한 자율 원산지 증명 제도로 자리한 것은 2011년 한-EU FTA 발효 시점이라 생각된다.

한-EU, 한-영국, 한-EFTA, RCEP 등 인증수출자제도가 운영되는 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수출 물품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FTA 특혜 관세를 활용할 수 없다.

FTA 특혜를 활용하려면 다음 5개 요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품목 요건은 계약국 간에 관세 등을 양허하기로 한 품목 ② 원산지 상품 요건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③ 당사자 요건은 계약국의 당사자(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간 거래되는 것 ④ 원산지 증명 요건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서류에 근거해 협정 관세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검증에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다. 또한 ⑤ 직접 운송 요건은 계약 당사국 간 FTA 품목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2국가 간 직접 이동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은 FTA 특혜 관세 신청의 필수 요소로 발급 주체에 따라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구분되며, 인증수출자제도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할 경우 수출자 등이 발급하는 자율 발급 방식에 해당한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관계 기관의 교육과 확대 노력으로 많은 기업이 인증수출자를 취득했지만, 소규모 업체나 신생 업체는 인증수출자제도를 어려워하며 FTA 활용율도 낮은 경향이 있다.

본고는 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사항을 분석하고 신청 시에 주의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활용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두 종류로 나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생산하는 전 품목에 대한 인증 능력을 인정받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 인증받은 품목만 FTA 원산지 자율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구분

인증수출자 종류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 범위	신청 업체 생산 품목	인증받은 협정과 품목 (HS 6단위)
인증 유효 기간	5년	5년 (법규 준수도별 차등 적용)
인증 기관 (7개)	6개 본부 세관(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평택 직할 세관	
인증 기준	체약 상대국별 원산지 증명 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 능력 및 관리 능력

2) 원산지인증수출자 효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으면 얻는 효과는 한-EU, 한-EFTA FTA 등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는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 발급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면 기관 발급 대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표 2] 원산지인증수출자 효과 비교

종류	비(非)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한-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이하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Invoice 신고 시) 수출자 서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첨부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필증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 서류 현지 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첨부 서류 제출 생략 현지 확인 생략 가능
기타 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미적용	





Ⅲ. 인증 절차와 확인 서류

1) 인증 절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 본부 세관 또는 직할 세관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하는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송부 또는 전산망 유니패스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에 따른 인증 신청 요건은 업체별과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신청 업체의 전 품목에 대하여 인증수출자제도를 인정하는 FTA 모두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위법 사실 조회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이거나 생산자이다. 1) 수출 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 조사는 현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1) 수출 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 번호 6단위 기준)이어야 하고, 2)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말한다.



[표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과정

업무 절차		수행 업무
관할 세관	신청 서류 접수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
원산지 정보원 이행지원 센터 (예비 조사)	신청 서류 인수	서류 인수 및 제출 서류 완비 검토 * 서류별로 예비 조사 시스템의 인수인계 대장을 확인 하여 제출 서류 확인
	신청 업체 개황 조사	수출 업체 소재지, 생산자, 업체 규모 등
	품목 분류 적정성 검토	신청 물품 품목 분류(HS 6단위) 적정성 검토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신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및 충족 여부 검토
	보완 요구 목록 작성	품목 분류 적정성,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사항 및 형식적 오류 기재
	결과 보고서 세관 인계	예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세관 인계
관할 세관	최종 인증 심사 및 인증서 교부	예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인수하여 최종 인증 심사 후 인증서 교부

2) 인증 심사 주요 내용 및 서류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 업체가 주소지 관할 본부 세관에(수출 입기업지원센터) 신청하면 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본부 세관과 평택 직할 세관의 세관장은 인증 심사를 실시한다.

주요 심사 내용은 수출 물품 원재료의 HS 품목 분류 적정성과 원산지 관리 적정성, 생산 물품이나 중간재, 완성품이나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타당성, 부가가치 비율 산정 적정성, 원산지 판정 정확성, 원산지 증빙 자료 관리 준법성 등이다.



인증수출자 심사에서 확인하는 서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품목 분류와 HS 코드 번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청서 HS 6단위 품목이 FTA에서 정하는 양허 대상 품목인지 확인과 결정된 HS 품목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WCO(세계관세기구)는 국제무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HS 품목 코드를 품목별로 6단위 숫자로 정하였으며, 국제 협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는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 공정을 확인한다.

신청 업체가 실존하는지,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인지 확인하고 해당품목의 생산 시설을 올바르게 갖추었는지 점검하며, 그 과정이 원산지 판정 기준에 비추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셋째는 수출자의 원산지소명서 작성 능력을 검토한다.

주요 수출(생산) 품목이 HS 코드 6단위로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원산지 소명서 각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원산지 확인서가 작성 기준을 준수하며 작성되었는지, 원산지 소명서와 일치하는지와 원재료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적용이 정확한지를 검토한다.

넷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인증 예비 심사는 수출품을 FTA별로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고 원산지 최종 판정 결과가 협정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표 4]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 서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확인 서류
① 수출 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 분류 번호 및 원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의 품목 분류 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확인서·국내 제조 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 서류 확보 주요 원재료 공급 업체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원재료 공급 업체 선정 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 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 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품목의 상대국 품목 분류 번호 관리 해당 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품목 분류, 원산지 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 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 공정 설명서, 원산지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소명서 작성 능력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세스 적정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 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부가가치 기준 적용 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 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원산지 최종 판정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세스 적정 여부(시스템 설명서, 업무 매뉴얼) 서류 작성 적정 여부(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 자료)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검증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전자 서류, 스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 계산서·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 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 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 매뉴얼



[표 5]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 서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기재된 품목 번호 6단위 물품의 대표 품목(품목 번호 6단위별)을 선정하여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불인정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 확인서 작성이 정확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작성 능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생산) 품목(품목 번호 6단위별) 선정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 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 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품생산공정 설명서 등

IV. 인증 심사 빈번 오류 분석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 받은 뒤 검토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다. 2023년 1년간 신청된 9,050건을 집중 분석해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사항을 정리하고 방지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발생 오류는 HS 품목 분류 착오가 가장 많았고 원산지 결정 기준 잘못 적용 사례, BOM 작성 오류, 제조공정도 작성 오류, 가격 증빙 서류 미제출 등의 순이었다(신청 1건에 지적 항목은 여러 건 발생).

인증 심사에서 빈도수가 높은 오류 사항은 HS 품목 분류 착오로 완제품 신청 세번 분류 착오가 553개, 원재료 품목 분류 착오가 5,748개이다.

신청 서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HS 품목 분류 착오가 241개 발견되어 인증 심사 신청할 때 완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HS 품목 분류 착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재료 HS 품목의 분류 착오가 완제품 분류 착오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데, 원재료의 품목 분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HS품목 분류 업무가 다

소 미흡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증 서류 전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BOM(원재료명세서) 품목 분류 오류 7,079개(25%), 원산지소명서 작성 오류 6,135개(22%), 제조공정도 작성 오류 3,548개(12%),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오류 2,815개 (10%), 인증 신청서 작성 오류 2,228개(8%), 가격 등 증빙 서류 미제출 2,003개(7%)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6] 발생 항목 건수와 오류 내용

구분	오류(개)	비율(%)	오류 내용
1. 원재료명세서(BOM)	7,079	25%	원산지소명서와 불일치, 원재료 내역 기재 오류(HS, 가격 등), 작성 일자 미기재 등
2. 원산지소명서	6,135	22%	완제품 HS 기재 오류, 규격 미기재 등
3. 제조공정도	3,548	12%	작업처 미기재, 작성 일자 미기재 등
4. 원산지(포괄)확인서	2,815	10%	구서식, 포괄 확인 기간 오류, 작성자 서명 누락 등
5. 인증 신청서	2,228	8%	원산지 결정 기준 기재 오류 등
6. 가격 등 증빙 서류*	2,003	7%	단가·가격 산정 오류, 증빙 자료 미제출 등
7. 서면 확인서	1,342	5%	신청인 기재 오류 등
8. 기타	2,283	11%	미제출, 지정 사유 미기재 등
보완 사항 소계	27,433	100%	-

* 가격 등 증빙 서류 :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가격 기타 증빙 서류





V. 시사점

BOM(원재료명세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증 신청서 작성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이나 오류 사항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HS 품목 분류의 정확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품목 분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수출국 요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관세사 등의 전문가 활용, 종전 처리 사례 참조, 관세청 품목 분류 사전 심사 활용 등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HS 품목 분류가 잘못되면 거래처가 추징당하거나 책임 소재 다툼 등으로 거래 관계에 부정적이며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품목 분류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에 유념해야 한다.

신청 물품 원산지 결정 기준이 협정상 4단위(CTH) 세번 변경을 실수로 2단위(CC) 세번 변경으로 혼동하거나 6단위(CTSH) 세번 변경으로 혼동한 경우가 있고, 부가치를 계산할 때 가산 요소와 공제 요소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교육 강화로 관리 능력을 높이거나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업무 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원산지소명서 작성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원산지소명서는 수출 물품의 요약본으로 작성 후 반드시 전체 서류와 비교 및 대조 작업을 실시해 오류가 없도록 하고, 수출국이 2개 국가이상이면 FTA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정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넷째, BOM은 원산지소명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재료는 원산지에 따라 역내산 원재료와 역외산 원재료로 구분해 역내산 원재료에 대하여는 증빙 서류와 거래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공정도 작성 때 HS 코드에 유의해야 한다. 제조공정도는 단계별로 투입되는 원재료와 어떤 원재료가 투입되는지, 어떠한 공정이 수행되는지 가공 공정을 설명해 준다. SP(Specific Process)인 특수 가공 공정과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가격 증빙 서류 등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해야 한다.

원재료에 대한 거래처별 구매내역서 등은 부가가치를 산출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서 가격 구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이다. 구매내역서나 가격 자료 등이 일부만 제출되거나 전체 자료가 부족하여 부가가치 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EFTA(2006년) 발효 이후 18년이 지나며 인증수출자제도는 상당히 안정화되었다. 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출입 업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린다.

수출입 업체 CEO는 월 단위 또는 분기별로 업무 점검이나 격려를 통하여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여부와 인센티브 제공, 승진이나 가산점 부여 등 처우 개선을 통해 FTA 활용을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 당국은 수출입 업체 지도 방문 계획을 운영하고, 법규 준수도 평가 항목으로 인증수출자 항목을 추가하고, 우수 사례 경연 대회 개최 등을 검토해 홍보를 통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인증 신청 시 발생된 오류 사항을 분석해 방지 대책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은 본고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인증수출자 신청 시 오류를 줄이고 향후 FTA 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FTA TRADE REPORT

09

FTA 지도

2022년 vs 2023년 FTA 수출입국 주요 5대 품목의 증감





2022년 vs 2023년 FTA 수출입국 주요 5대 품목의 증감

MTI* 1단위

- | | |
|-----------|------------------|
| 1. 농림수산물 | 2. 광산물 |
| 3. 화학공업제품 | 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 5. 섬유류 | 6. 생활용품 |
| 7. 철강금속제품 | 8. 기계류 |
| 9. 전자전기제품 | 10. 잡제품 |

* MTI : 산업정책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집행 및 경제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산업부에서 수출입품목분류를 작성함

- 분석배경**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국의 2023년 교역(수출·입)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율을 확인하고자 함
- 기준연도** : 2023년(1월~12월)
- 대상협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 한-인도네시아 CEPA 경우, 2023년 1월 1일 발효로 2023년 상위 5대 수출실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분석배경** : FTA 대상 수출입(MTI 1단위 아래 MTI 3단위 비교)

- ▶ 품목군 추출은 2022년과 2023년의 FTA 대상금액 합이 최소 만 달러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되었음
- ▶ 추출된 MTI 3단위 품목(MTI소분류명)은 증감 여부에 따라 5대 미만 품목으로 추출될 수 있음

특이사항

- 한-싱가포르 FTA : 2023년부터 수출실적을 산출하기 시작하여, 수출 파트에서는 증감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한-인도네시아 CEPA : 해당 협정은 2023년 1월 1일 발효로 증감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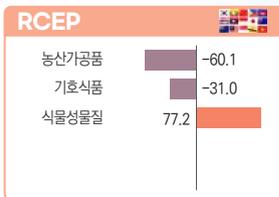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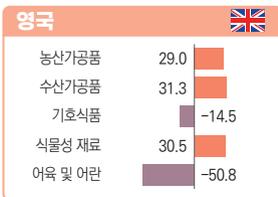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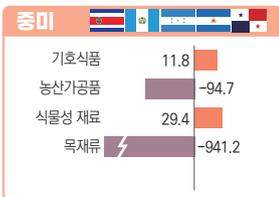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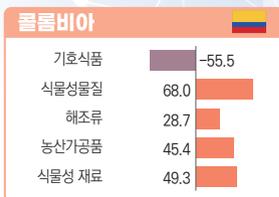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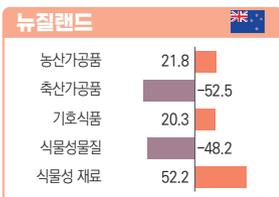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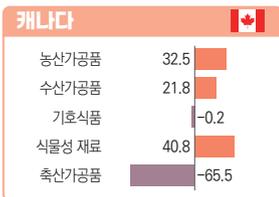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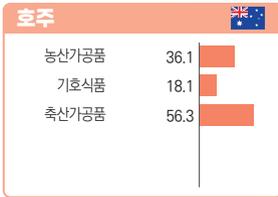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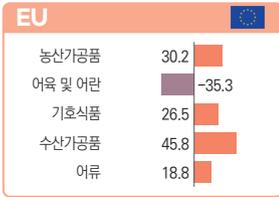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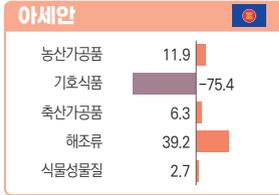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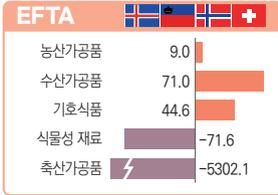




수출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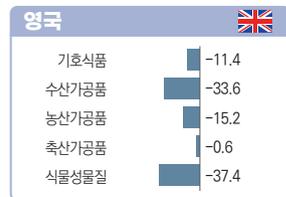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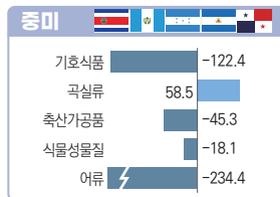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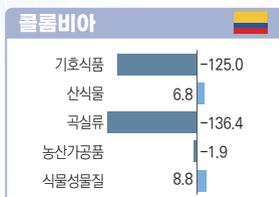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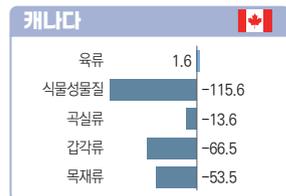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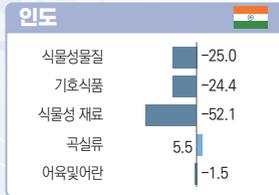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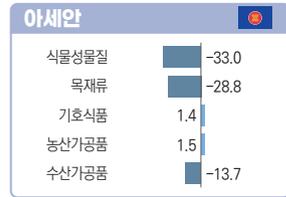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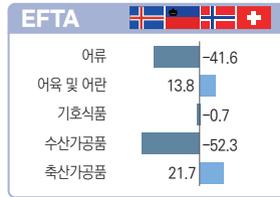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농림수산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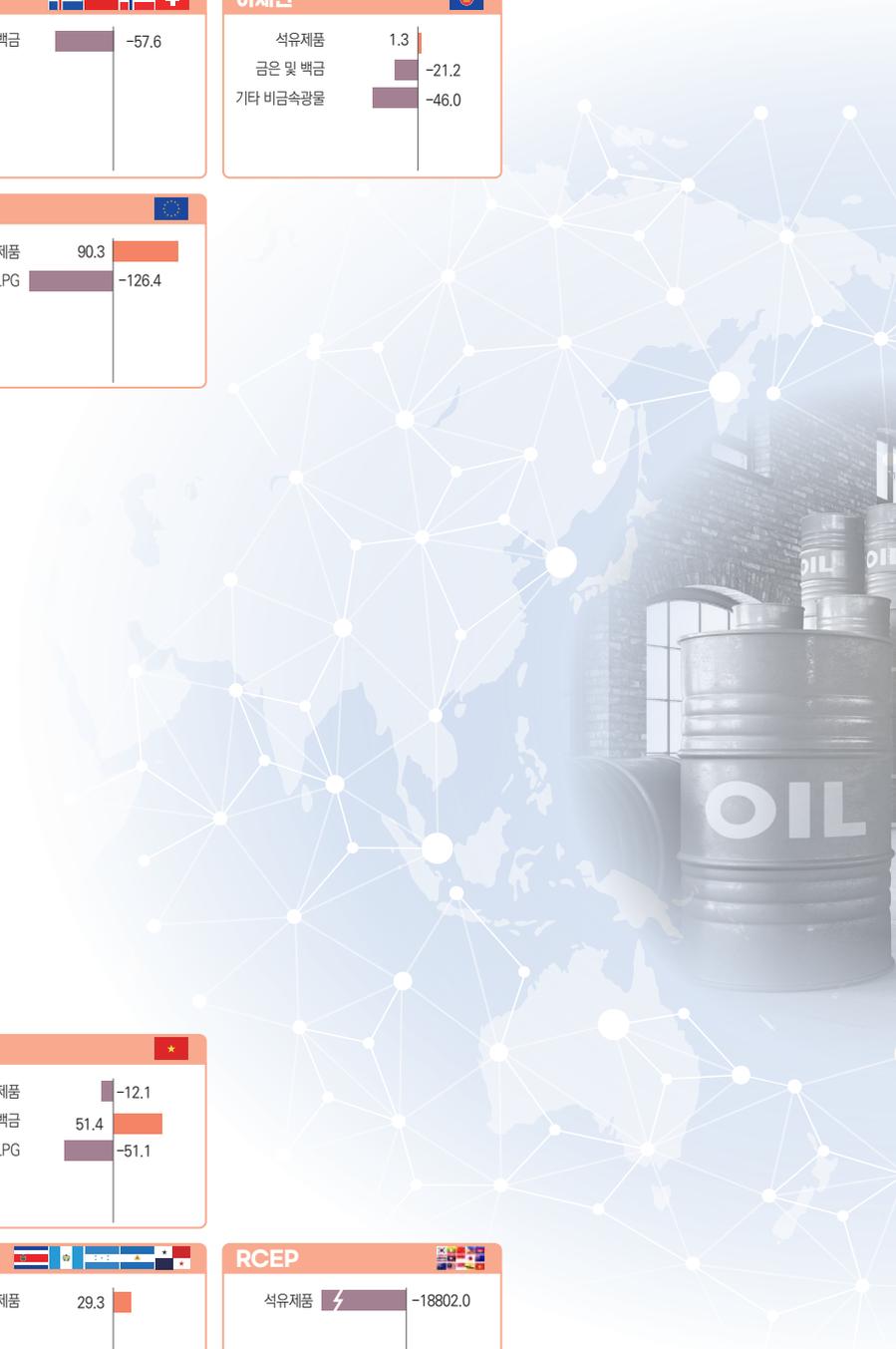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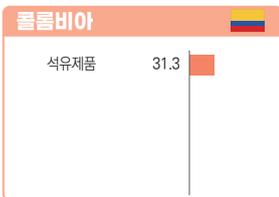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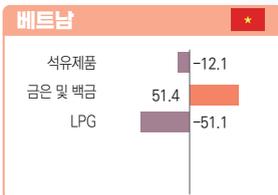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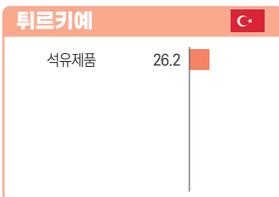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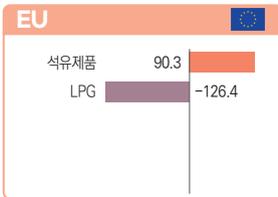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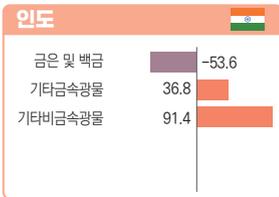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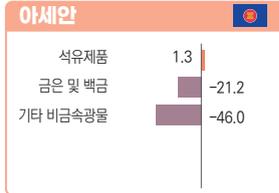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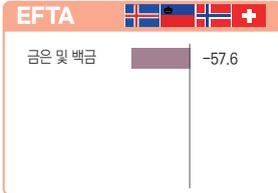




수출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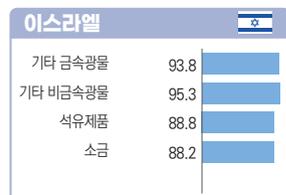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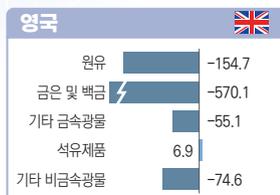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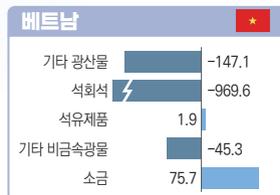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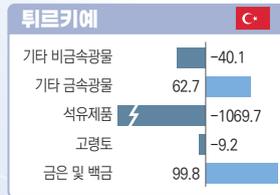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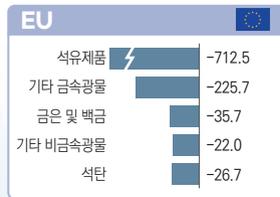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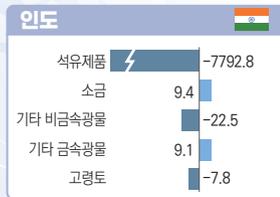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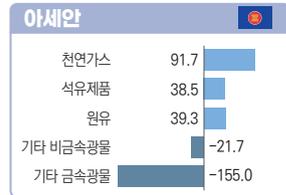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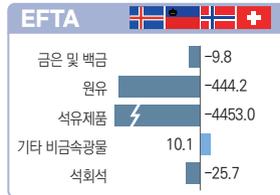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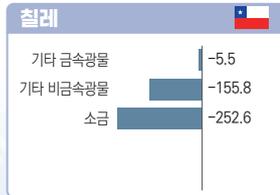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광산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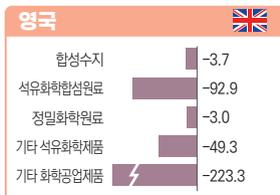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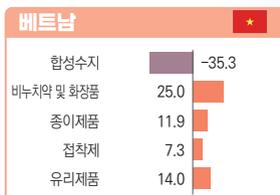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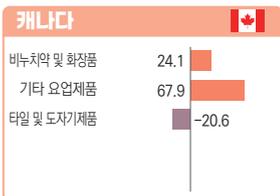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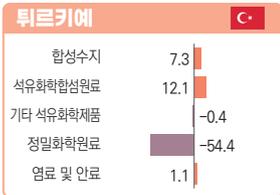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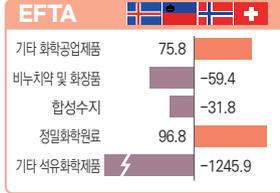




수출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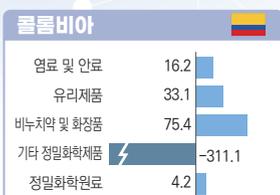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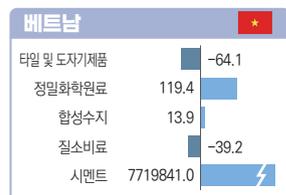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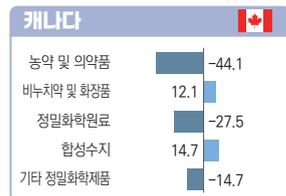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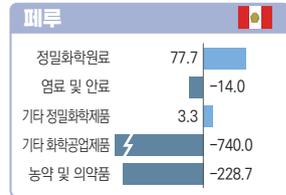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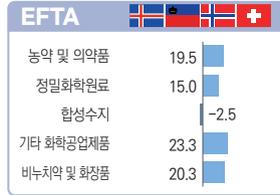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화학공업제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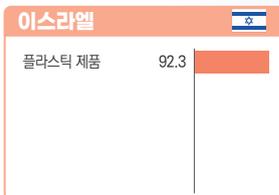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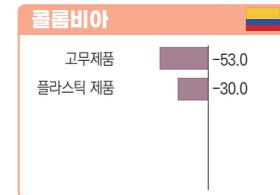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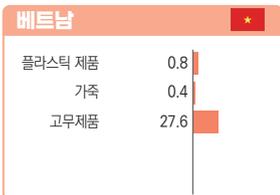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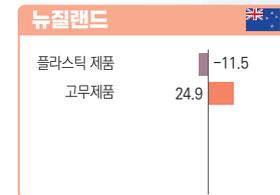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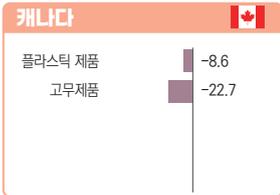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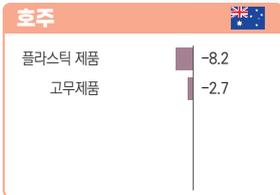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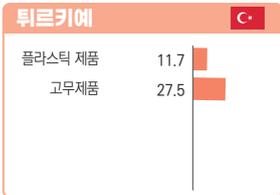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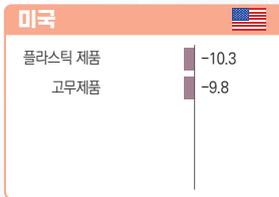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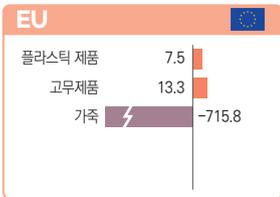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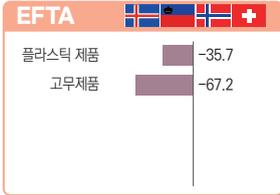




수출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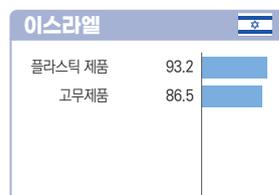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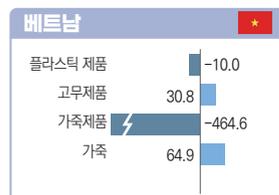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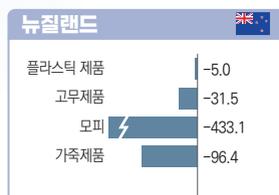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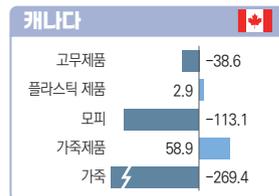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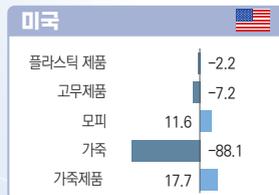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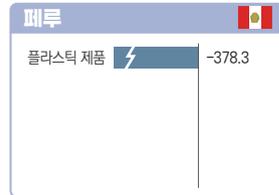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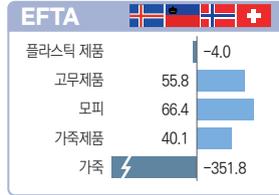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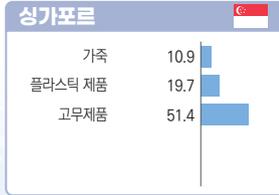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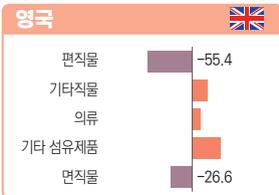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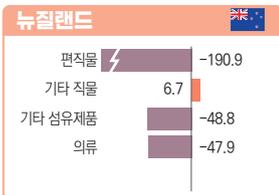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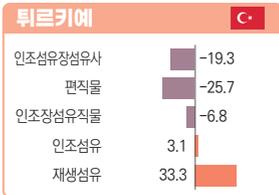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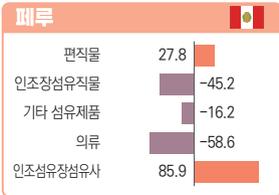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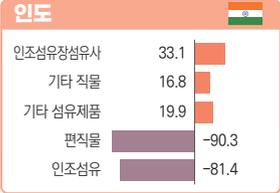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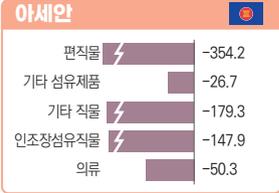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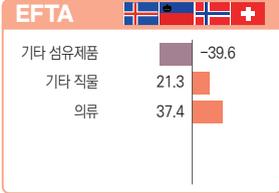




수출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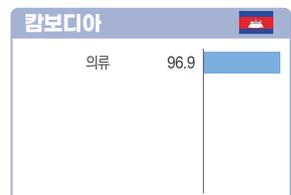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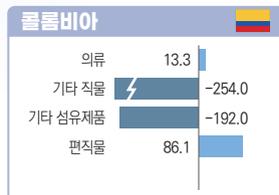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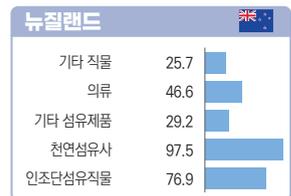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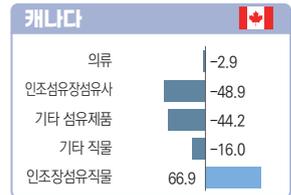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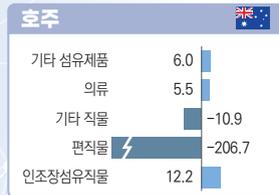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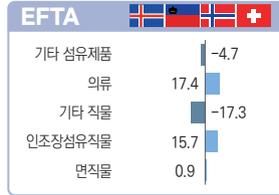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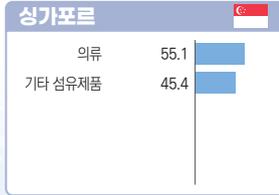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섬유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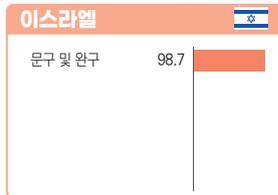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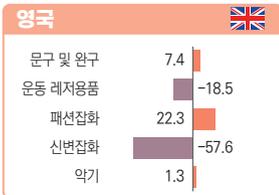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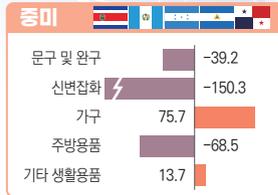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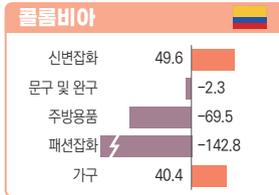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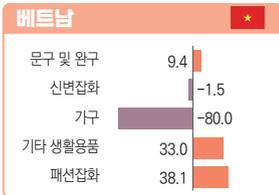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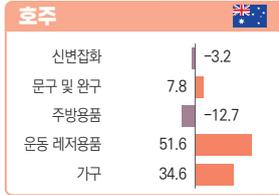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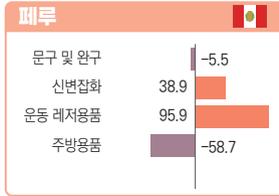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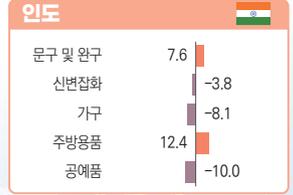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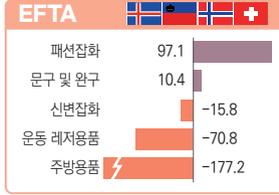




수출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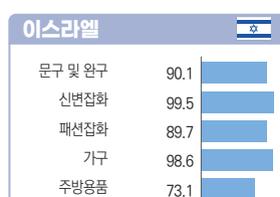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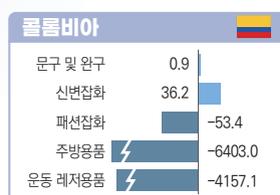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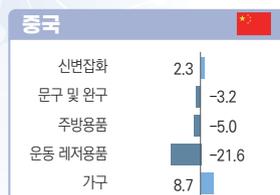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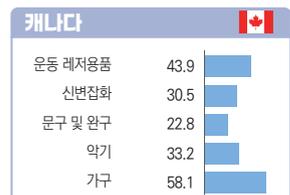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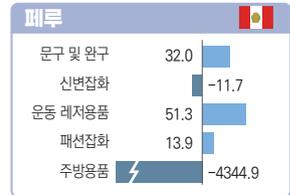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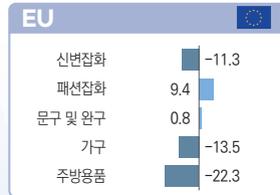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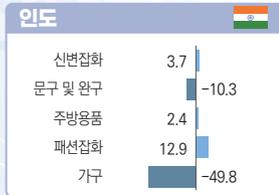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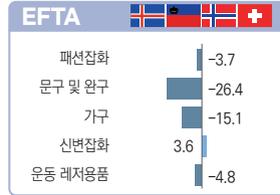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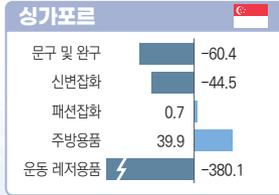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생활용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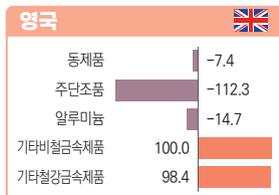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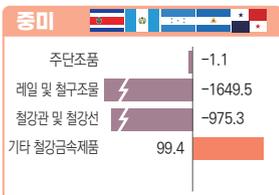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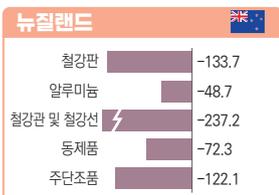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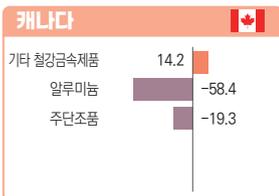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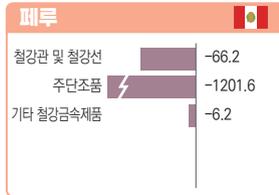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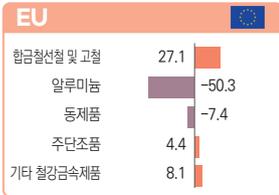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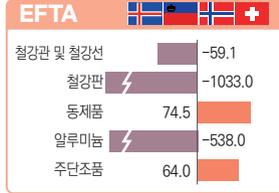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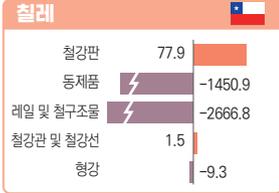




수출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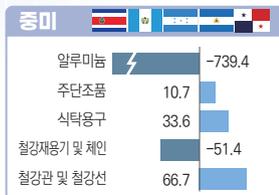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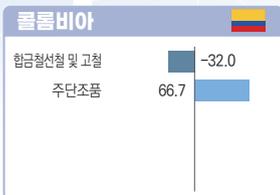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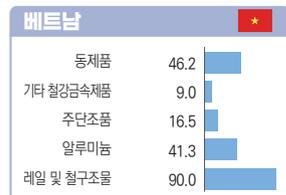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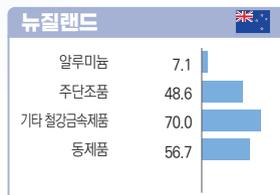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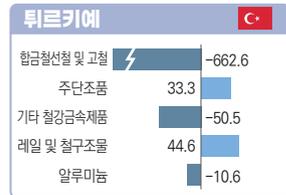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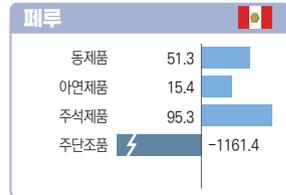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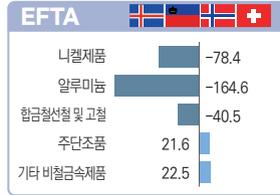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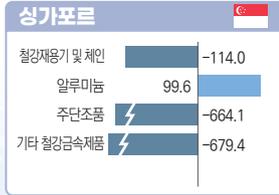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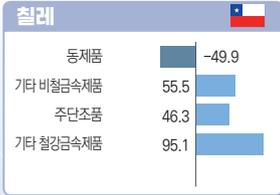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철강금속제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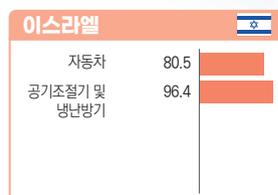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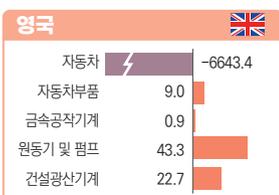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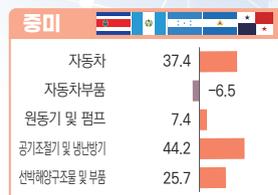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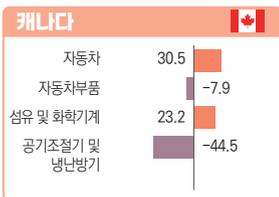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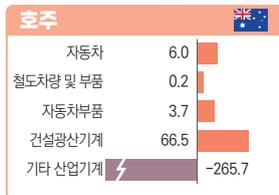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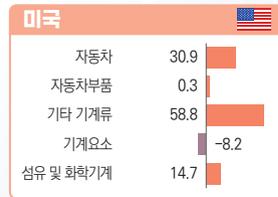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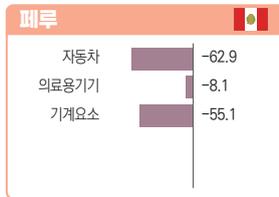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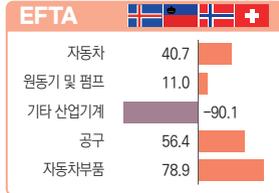




수출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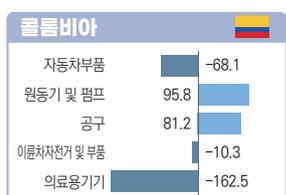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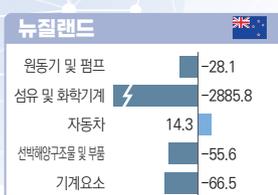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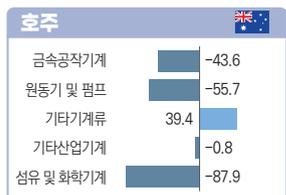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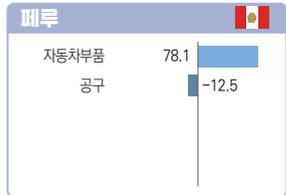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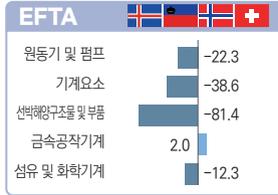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기계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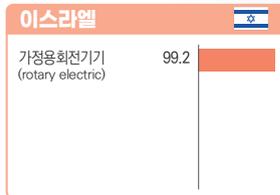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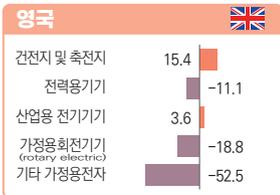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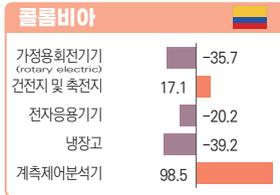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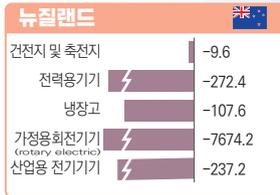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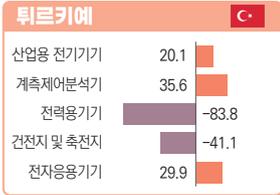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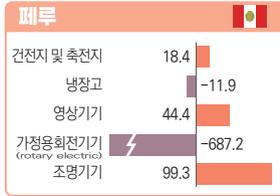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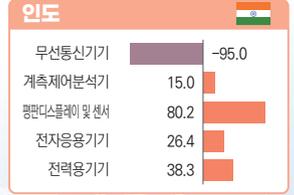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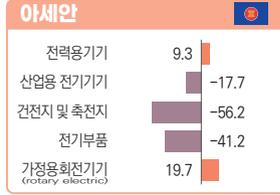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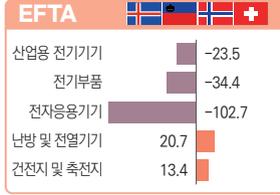




수출

전기전자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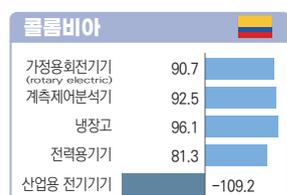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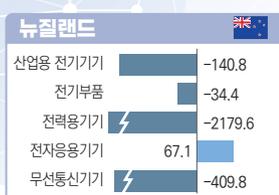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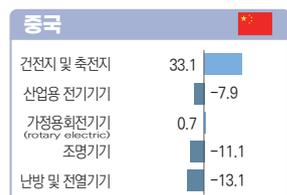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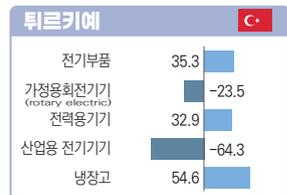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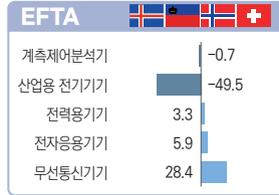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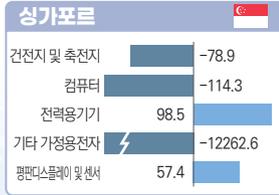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전기전자제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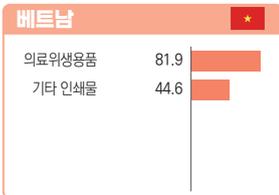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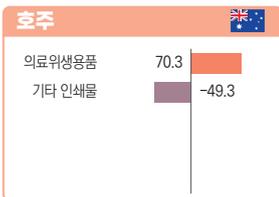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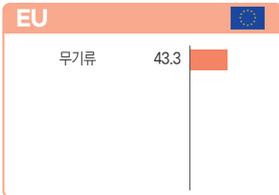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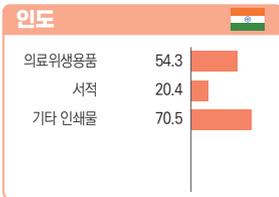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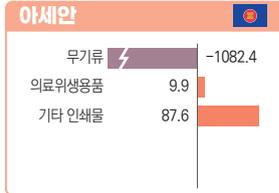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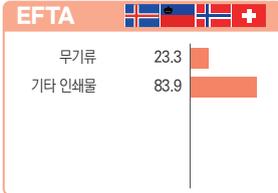




수출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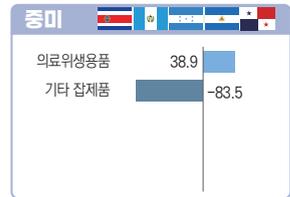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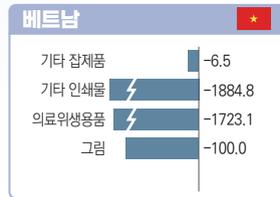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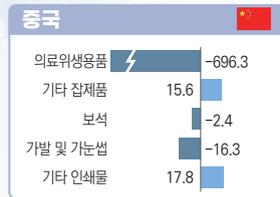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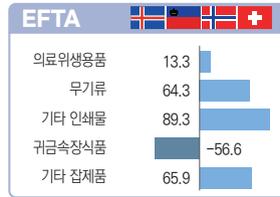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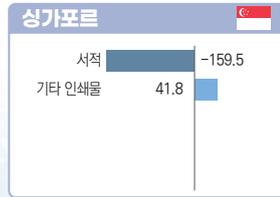
(단위 : %)



수입

잡제품

(단위 : %)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March 2024 Vol. 01 (통권 45호)

(비매품)

발행일 2024년 03월

발행처 한국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한국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화신문화(주)

ISBN 979-11-85815-90-9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한국원산지정보원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야탑동 성남세관 5층)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

